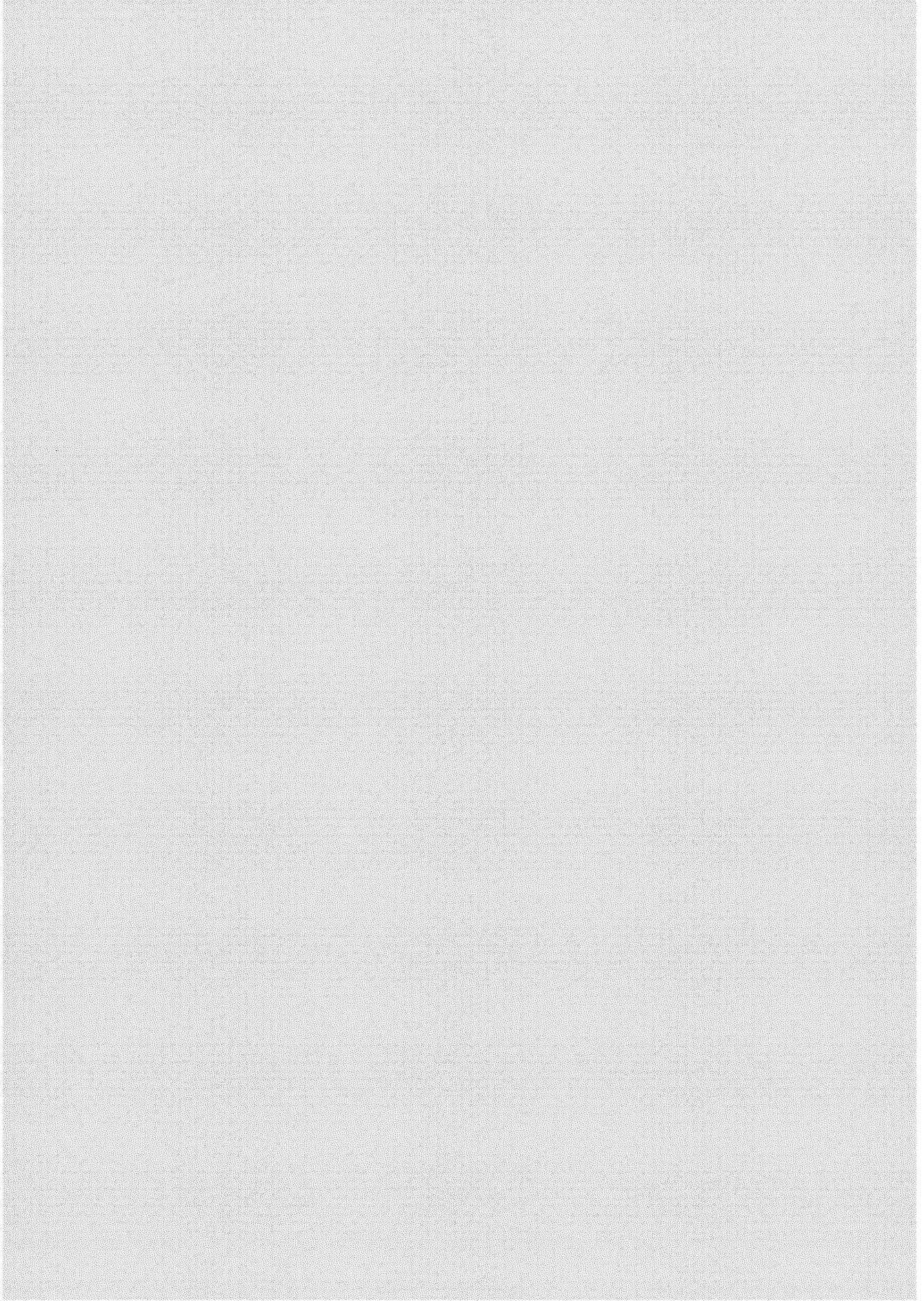


第10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99.8.23~8.27.)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999. 8. 통권 제65호

| | |
|---|----|
| I. 개회식 | 3 |
| II.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5 |
| III.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5 |
| IV. 부 록 | |
| 1. 의사일정 | 25 |
|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7 |
|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 61 |
| 4.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69 |
| 5.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71 |
| 6.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 | 77 |
| 7.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서(안) | 83 |
| 8.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85 |

| | |
|--|----|
| 9.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 89 |
| 10.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 93 |

V. 별 책 부 록

- ▶ '98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 별책1
- ▶ 1998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작성지침 : 별책2
- ▶ 1998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건서 : 별책3
- ▶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별책4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8월 23일 (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04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용건)

(11시 00분 개식) 회의를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신용건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최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8월 23일 (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4.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5.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
6.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안용균)
2.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교육감 제출)
5.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6.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7.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8.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충청북도교육

● 의장 조일환

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함

니다.

지난 달에 회의가 없었던 관계로 오랜만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특히, 집행청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주일간 '99년도 을지연습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안용균

의사과장 안용균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도 8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고 제99-7호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바 있는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7월 16일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99년 8월 6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또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총액 변동없이 세출예산중 2,32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지정되

어 세입·세출 총 7,958억 1,948만 1천원으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과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용자특별회계용자및지방채발행안은 '99년 7월 2일자로 교육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후,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및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과 함께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05분)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드린 바와 같이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8월 27일

까지 5일간으로 하고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내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소위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의사일정안 : 별첨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간담회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은 이번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원

금강산 연수에 참석하는 관계로 소관국장인 교육국장이 오늘의 회의에 참석하지를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발언대로 나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교원 금강산 연수 인솔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일환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급격한 사회 변화와 직종의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학원운영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원의 교습과정의 분류가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학원의 시설규모와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시행령의 내용대로 조정하였으며, 둘째, 현재 05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3시까지로 1시간 연장 운영토록 하고, 셋째,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학원 및 교습소의 부제 교습 횟수는 시행령이 삭제되어 관련규정을 폐지하였으며, 넷째,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의 위치와 건물과 수평거리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유해업소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규정도 시행령 삭제로 관련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섯째,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보고는 통보로 하고, 해임 통보기한을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여섯째, 학원수강료의 1년 이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은 상위법에 위임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수강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강료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일곱째, 입법예고에 대해 학원연합회충북지회에서 제시한 우수 학원의 지정 육성과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진흥 내용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2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끝에 실음)

● 의장 조일환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
조례안

5.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

(11시 12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 등 이상 4건을 동일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일환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의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교육자치법규중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유사성격 조례인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의 3건의 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로 통합하여 1건의 조례로 활용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수료의 범위, 수수료 금액과 납부방법을 명기하였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수수료를 면제토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관련 4건의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고, 이 조례를 통합함에 있어서 수수료 금액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을 변동없이 하였습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 별첨3

(끝에 실음)

다음에는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된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13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결산은 8,022억 4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6,798억 2,600만원으로서 1,223억 7,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654억 6,100만원이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69억 600만원으로서 '99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잔액이 1,100만원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8,023억 1,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8,022억 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17.9%인 1,435억 2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82.1%인 6,58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24억 7,100만원으로서 84.7%인 6,798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654억 6,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71억 8,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4,363억 7,700만원, 물건비 787억 1,300만원, 경상이전비 489억 8,300만원,

자본지출경비 1,157억 5,300만원으로 총 6,798억 2,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현황은 총 654억 6,100만원이 '9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중 학교전산망 구축사업 등 185억 9,1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고, 227억 3,1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41억 3,900만원은 계속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채권액은 대지로 등 8,100만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운영비로 269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99년 3월 개교한 칠금초등학교와 '99년 9월 개교하는 경덕초등학교 외 3개교 시설에 380억 5,600만원을 투자하였고, 충북예술고등학교 이전 사업에 47억 3,200만원, 부족교실 증축에 32억 8,600만원, 기존시설 확충에 51억 4,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특기교육을 위한 다목적 교실 및 강당 신축에 42억 2,5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41억 2,900만원, 농촌현대화 시범학교인 미원초등학교 외 2개교에 23억 9,900만원, 과학교육원 이전 신축사업에 47억 9,600만원, 기타 기관 시설에 14억 3,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실의 현대화 및 교단의 선진화를 위하여 최첨단 교재·교구 확보에 58억 6,100만원을 투자하

였고,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하고자 원어민 영어교사를 초청 생활외국어 교육강화에 4억 3,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유아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치원사 신축 및 화장실 난방시설비로 33억 7,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에 균형있는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비 419억 1,500만원, 시설비 3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학, 기술, 정보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확충시설 및 기자재확충비 37억 9,900만원, 멀티미디어실 설치 및 운영비로 6억 1,500만원, 교육용컴퓨터 보급 및 컴퓨터교육비 지원에 14억 3,300만원을 투자하였고,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비 21억 6,800만원, 실험실습비 15억 6,800만원, 장학금 4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심신의 건전한 발달도모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학생급식 시설비로 23억 1,100만원, 운영비로 69억 4,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결식아동 중식비로 7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자질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총 1만 806명을 대상으로 각종 자격연수, 일반연수, 국외연수에 22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각급학교 교무실에 냉방기의 1종 543대 설치에 5억 5,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명예퇴직제 확대에 공·사립학교 교직원

230명에게 91억 9,700만원의 퇴직수당을 집행하였고, 교육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사무 자동화 추진을 위하여 8억 8,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IMF 및 보은지역 수해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21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참 조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별첨4

(끝에 실음)

'98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 결산개요 : 별책1

1998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작성지침 : 별책2

1998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별책3

다음에는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비비 지출은 모두 6건에 8억 663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IMF체제하의 실직자들에게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여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실업계 8개교의 재교육 실시 경비로 6,158만원, '98년 8월 12일, 13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보은 중곡초외 2개교의 수해복구비로 3,195만원, 교육공무원 정년 조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1억 8,815만원, 공무원연급법에 의한 사망조의금 및 공무원 상

해보상금 부족분으로 본청 및 고등학교에 4억 4,649만원과 지역교육청에 5,183만원, '93년 10월 21일 18시경 발생한 제천중학교 교내 화재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금 지급을 위하여 2,66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참 조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별첨5

(끝에 실음)

끝으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청주 창신초등학교 소유 잡종재산인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411번지의 2필지의 토지 1,168.2㎡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관리하여 왔으나 향후 활용할 가치가 희소하여 교육환경개선 재원확보를 위해 처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참 조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 : 별첨6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서(안) 설명자료 : 별첨7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각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중 2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99년도 제5회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한 관련 현장을 방문한 후에 '98년도 예비지출 승인의 건과 함께 8월 27일에 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9.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24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는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분 위원님으로 각각 구성하는 것으로 합시다만은 혹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제7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인을 제외한 여섯분 위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제8항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도 본인을 제외한 여섯분 위원님

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즉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위원회에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금회의 회의록 서명위원은 김광수, 손만재 두분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바로 조례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으며, 내일부터 3일동안 중에는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의안관련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집행청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곽창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 홍재문, 초등교육과장 김천호,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증수조례안 : 별첨3
- ▶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별첨4
- ▶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별첨5
- ▶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 : 별첨6
- ▶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서(안) 설명자료 : 별첨7

※ 별 책 부 록

- ▶ '98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 별책1
- ▶ 1998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작성지침 : 별책2
- ▶ 1998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별책3
- ▶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별책4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8월 27일 (금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3.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교육감 제출)
3.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4.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5.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일환

좌석에 모두 정돈되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결과를 보고받으신 후 '98년도

지난 4일동안에는 의안관련 현장을 다녀 오셨고,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소위원회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관련 현장을 다녀오신 '99년도 제5회 공유재산변경계획안과 함께 안전별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11시 01분)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소위원회 이충원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충원위원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충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원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은 지난 8월 12일 교육감

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부터 심사에 들어가 각각 세 번에 걸쳐서 심사를 신중하게 마쳤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들으신 바 있으므로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집행청에 부탁드릴 말씀은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일부 시·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토 분석하여 실효성이 있다면 차후 동 조례안의 개정시 학원자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우수 학원 지정 육성에 대하여는 대상 학원 선정 기준과 방법, 육성방안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수강료의 1년 이내의 변경을 금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학원수강료

(끝에 실음)

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등 그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다분히 있으므로 학원수강료 안정에도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 참 조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8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주요내용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심사보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역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자칫 입법운영상의 실효성과 관련 조례 난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합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역시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9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짧은 일정 속에서도 정말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 협조해 주신 데도 역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소위원회 활동에 계속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청 관계관계서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시거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요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요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 10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결산소위원회 이기수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기수위원장님께서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기수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6인 위원이 '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8월 12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금번회기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3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을 총괄하여 보면 '97년 회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8,024억 7,166만 2,000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은 각각 8,022억 400만 4,000원과 6,798억 2,607만 5,000원으로 1,223억 7,792만 9,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결산내역을 세입, 세출, 이월비, 예비비, 재산, 금고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8,023억 1,567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022억 400만 4,000원이 수납되고, 2,969만 5,000원이 불납결손 처리됨으로써 예산액 대비 99.9%,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본 바, 의존수입이 6,587억 177만 7,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의 82.1%나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체수입은 1,435억 222만 7,000원으로 17.9%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재정자립도는 약간 상향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6,798억 2,607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7%가 집행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54억 6,123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2%정도이며, 불용액은 571억 8,43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입니다.

지출액을 관별로 세분하여 점유율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월액은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중 시설비가 85.3%로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비율이 7.1%로 '96년도에 4.6%, 전년도에 5.6%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급여관리, 학교비, 시설비, 예비비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관별 점유율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급여관리 및 교육행정비 1.3%, 교육사업비 0.2%, 시설비는 1.6%가 각각 증가한 반면 학교비 1.9%, 사학지원비 1.1%, 예비비는 0.1%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이월비 결산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명시이월 37건에 185억 9,168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 32건에 227억 3,080만 1,000원, 계속이월 1건에 241억 3,874만 1,000원, 총 70건에 654억 6,123만 7,000원으로 이를 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본청이 23건에 398억 6,829만 2,000원이고, 지역교육청이 47건에 255억 9,294만 5,000원으로 총 이월액에 대한 점유율은 각각 60.9%와 39.1%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결산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직업교육확충외 5건의 사업에 8억 663만 4,000원으로 금회 제10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8회계년도중 채권은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8,197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채무액의 발생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9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791억 8,981만 8,000원이 증가된 1조 5,558억 1,404만 4,000원인데 행정재산의 '97년도말 현재액은 1조 4,587억 9,657만 1,000원으로 '98년도에 886억 5,278만 9,000원이 증가되고 139억 2,368만원이 감소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은 1조 5,335억 2,568만원이며, 잡종재산의 '97년도말 현재액은 178억 2,765만 5,000원으로 '98년도

에 99억 1,192만 5,000원이 증가되고 54억 5,121만 6,000원이 감소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은 222억 8,836만 4,000원입니다.

다음 물품의 '98년도말 현재액은 9,839점에 499억 1,449만 9,000원으로 '97년도말 현재액 8,788점 445억 926만 3,000원에 비하여 '98년도에 1,765점에 97억 3만 4,000원의 증가와 714점 42억 9,479만 8,000원으로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금고의 결산을 말씀드리면, '98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누계액은 총 수입이 8,022억 400만 4,000원이고 총 지출이 6,798억 2,607만 5,000원이며, 차인잔액이 1,223억 7,792만 9,000원으로 차인잔액 모두가 결산전에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는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와 같이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규정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기관의 경비와 운영비를 절감하여 IMF상황 하에서 긴축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좀더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으로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시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시행을 추진하여 연도 내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 교육시설이

부실하게 시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교육사업이 유보 또는 취소될 경우 시급한 교육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앞에서 적시한 개선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의 승인을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별첨10

(끝에 실음)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거

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 21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

(11시 22분)

● 의장 조일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에는 5일동안 본회의와 소위원회를 열고, 2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99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처리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청과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장이 본청에 축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104회 임시회처럼 집행청에서 참석 공무원이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이렇게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번의 안건이 교육감 발의로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집행청의 행사 일정이나 부득이한 일정을 감안해서 회의를 촉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이 안건의 성격으로 봐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많습니다.

도의회에서 다시 받아야 할 안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런 안건을 심의하는데 본회의장에 사전 연락없이 이렇게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의장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촉구하기 위해서 회의규칙 제53조를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제53조 교육감 등의 출석요구 : 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적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두 번째,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사유서를 의장에게는 사전 제

출한 후 관계공무원에게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16개 시·도교육위원회에 출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본도의 도의회는 어떻게 출석을 시키고 있는가를 점검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의례적인 의사일정에는 별도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의회에서 도의회가 개최된다고 하면 반드시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별도의 출석요구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1대서부터 오늘날까지 이러한 평상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린 바가 없습니다.

또, 최민식씨가 쓴 지방자치 강론에 보면 “평상 의례적인 일정에는 요구가 없어도 요구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하는 그런 구절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미뤄볼 때 앞으로 반드시 본회의에 150만 도민의 대표요, 1만 3천 교육자의 대표자입니다.

이런 의결기관에 무단으로 자리를 이석한다는 것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발하지 않도록 집행청에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위원님, 이러한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자치의 권한을 위해서 부득이 이러한 말

씀을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회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8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9명

부교육감 곽창신,

교육국장 최성태,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 홍재문,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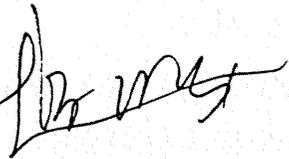
-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8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9
- ▶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별첨10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1999. 9. .

의 장

조 일 환



위 원

김 광 수



위 원

손 만 재



의사국장

고 일 영



(별첨 1)

議 事 日 程

第104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9. 8. 23. ~ 8. 27. (5일간)

| 일 시 | 부 의 안 건 | 비 고 |
|----------------------------------|--|--------|
| '99. 8. 23.(월) 10:30 11:00 | □ 교육위원 협의회 : 교육위원실 □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1999. 8.23. ~ 8.27. (5일간)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제안설명) 4.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제안설명) 5.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 6.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제안설명) 7.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 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제1차 본회의 산회] □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및 예산· 결산소위원회 | |
| 8. 24.(화) ~ 8. 26.(목) | □ 의안관련 현장방문 및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산· 결산소위원회 | 본회의 휴회 |
| 8. 27.(금) 11:00 | [제2차 본회의 개의]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3.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4.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 [제2차 본회의 산회] ※ 폐 회 | |

(별첨 2)

| | |
|-----------|---------------------|
| 의안번호 | 제104-1호 |
| 의결 년월일 | 1999. 8. . (제 회)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출년월일 | 1999. 8. /2.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1

제출년월일 : 1999. 8.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개정사유

급격한 사회변화와 직종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령이 개정('99.1.18. 법률 제5,634호, '99.5.10. 대통령령 제16,294호)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학원 운영의 자율성과 주민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함.

주요골자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안 제2조제2항 별표 2)
-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토록 하고, 학원의 부제 교습 횟수를 폐지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안 제5조)
-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수평거리가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학원의 설립제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6조)
-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로 완화하고, 해임 통보기한을 5일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학원 수강료의 1년이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은 폐지함(안 제8조제2항)
- 우수학원 지정·육성 조항 신설(안 제10조)
-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조항 신설(안 제11조)

개정근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개정('99. 1. 18.법률제5634호 : '99. 4. 19. 시행)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규칙상의행정규제정비 추진 지시('99. 5. 11.교육부)

조 례 안 : 불임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 불임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 : 불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교육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를 “영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교습과정과 가장 유사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정원)”을“(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반당정원”을 “일시수용능력인원”으로 하며, 제2항의 단서중 “증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설비 및 교구”를 “별표 2의 설비 및 교구중에서 증원되는 인원의 교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 및 교구”로 한다.

제4조의 제목“(학원의 교습시간 및 부제교습횟수)”를“(학원의 교습시간)”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05:00부터 22:00까지”를 “05:00부터 23:00까지”로 하며, 동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및 제1항, 제2항의 “보고”를 “통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채용할 때에는”을 “채용한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우수학원의 지정·육성) 교육감은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학원을 지정·육성할 수 있다.

제11조(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학원설립·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중 “충청북도교육규칙”을 “교육규칙”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 표 1]

학원의 시설규모

| 분 야 | 계 열 | 교습과정 | | 시 설 규 모 |
|-------------------------|----------------------------------|---|--|---|
| 직업기술 | 시행령 제7조의 2의 제1항 별표 1의 직업기술 분야 계열 | 시행령 제7조의 2의 제1항 별표1의 직업기술분야 교습과정 | |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
| 국제실무 | 외 국 어 | 어학, 통역, 번역 | | 강의실 연면적 90m ² 이상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성인고시 | | 강의실 연면적 90m ² 이상 |
| | |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 강의실 연면적 60m ² 이상 |
| 경영실무 | 경영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 |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
| | 사무관리 | 부기, 속독, 속셈, 경리 | | 강의실 연면적 60m ² 이상 |
| 속기,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서, 펜글씨 | |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 | |
| 예 능 | 예 능 | 웅변, 화술 | | 강의실 연면적 60m ² 이상 |
| | |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모델, 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꽃기예 | |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
| 입시·검정 | 보통교과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 및 실업계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 입시종합 | · 강의실 연면적 : 시지역 210m ² 이상, 기타지역 150m ² 이상 |
| | | | 입시단과 | · 강의실 연면적 : 시지역 90m ² 이상, 기타지역 60m ² 이상 |
| | | | 검정고시 | 강의실 연면적 90m ² 이상 |
| 독서실 | 독서실 | | · 열람실 연면적 : 시지역 120m ² 이상, 기타지역 60m ² 이상 | |

[비고]

1. 시지역중 읍·면지역은 기타지역에 포함한다.
2.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별 표2]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분 야 | 계 열 | 교 습 과 정 |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기 준 | 비 고 |
|------|------------|-----------------------------|--|-----|
| 직업기술 | 산업기반 기술 | 1. 기 계 | 가. 시 설 (1) 설계실 60㎡ 이상 (2) 실습공장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반 2대 이상 (2) 모우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2. 자 동 차 (2-1,자동차 정비) |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정비실습실 6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작업대 10대 이상 (2) 디젤기관 2대 이상 (3) 가솔린기관 5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대 이상 (5) 부대시설 기계 10종 이상 (6)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2. 자 동 차 (2-2,중기운 전) |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운전실습장 990㎡ 이상 (3) 기재실 16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2) 엔진채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 |

| 분 | 야 | 계 | 열 | 교 습 과 정 |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비 고 |
|---|---|---|---|--------------------------|---|-----|
| | | | | | (4) 밧데리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 주유기 등 부대시설기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 | 2. 자 동 차 (2-3,중기정비) |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정비실습실 6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정비용, 불가동 분해조정용)1대이상 (2) 엔진체 2대 이상 (3) 각 장비별 부품 3조 이상 (4) 삼각대, 체인블럭, 전기용접기,산소용접기 야전용 유압프레스, 오일작기 각 1대 이상 (5) 중기정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8종 이상 (6) 중기정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7) 작업대 8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 | 2. 자 동 차 (2-4,자동차 운전) | 가. 시 설 (1) 강의실 66㎡ 이상 (2) 정비장 66㎡ 이상 (3) 주차시설 75㎡ 이상 (4) 기능교육장은 6,600㎡ 이상으로 하되, 제1종 대형면허반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3000㎡이상,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0㎡ 이상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2층으로 기능교육장을 설치하는 때에는 상하연결 차도의 넓이가 7m 이상이어야함) | |

| 분 | 야 | 계 | 열 | 교 습 과 정 |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비 고 |
|---|---|---|---|-------------|---|-----|
| | | | | | 나. 설비 및 교구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별표 15)에 서 규정한 기능교습 코스 각 1조 이상 (2) 기능교육장 일시수용인원 1인에 1대 기준으로 기능교육장 면적 300㎡당 차량 1대 이내 (단, 차량은 생산공장에서 출고된지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작증명서가 구비된 차량이어야 함)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 | 3. 화공 및 세라믹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2) 기재실 15㎡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 | 4. 전 기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2) 전기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모터 1마력 이상의 것 2대 이상 (2) 수전, 송전배전실 (3) 테스타 10대 이상 (4) 트랜스(변압기) 5대 이상 (5) 실험대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 | 5. 전 자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2) 기재실 1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재 (가) 회로시험기 2인당 1대 이상 (나) 신호발전기 3대 이상 (다) 트랜지스터체커 1대 이상 | |

| 분 야 | 개 열 | 교 습 과 정 |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기 준 | 비 고 |
|-----|-----|---------------|---|-----|
| | | | (라) 저주파발전기 2대 이상 (마) 트랜지스터 1대 이상 (바) 시그올레트시 1대 이상 (사) 정전용량계 1대 이상 (아) 임피던스브릿슈 1대 이상 (자)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30조 이상 (2) 텔레비전과정 (가) “ (1) ”호의 공통기재 (나) 텔레비전, 스위프발전기 1대 이상 (다) 음주선,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라) 고전압계 1대 이상 (3) 컴퓨터기기과정 (가) “ (1) ”, “ (2) ”호의 설비 및 교구 (나) 컴퓨터(전산기기) 5대 이상 (다) 컴퓨터용 모니터 10대 이상 (라) 컴퓨터용 프린터 1대 이상 (마)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4) 비디오과정 (가) “ (1)”, “ (2) ”호의 설비 및 교구 (나) VTR 2대 이상 (다) 비디오카메라 2대 이상 (라) 모니터텔레비전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6. 항 공 (항공정비) | 가. 시 설 (1) 강의실 30m ² 이상 (2) 정비실습실 60m ² 이상 (3) 기재실 3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항 공 기 (가) 고정익 1대 이상 (나) 회전익 1대 이상 | |

| 분 야 | 계 열 | 교 습 과 정 |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비 고 |
|-----|-----|-----------------------------|---|-----|
| | | | (2) 엔 진 (가) 수평대향형 1대 이상 (나) 수직대향형 1대 이상 (다) 성형 1대 이상 (3) 제트엔진 (가) Turbo Jet 1대 이상 (나) Turbo Prop 1대 이상 (다) Turbo Shaft 1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5)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7. 토목,건축 | 가. 시 설 (1) 설계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8. 의복·섬유 (8-1,양재· 한복)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실습대 2인당 1대 이상 (2) 재봉기 2인당 1대 이상 (3) 전기다리미 2인당 1대 이상 (4) 재단대 4인당 1대 이상 (5) 전신마네킹 5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8. 의복·섬유 (8-2,수예· 자수)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가) 자수재봉기 1인당 1대이상 (2) 수예,순자수,인형,조화과정 (가)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분 야 | 계 열 | 교 습 과 정 |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비 고 |
|-----|-----|-------------------------------|--|-----|
| | | 9. 농 립 (동물)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300㎡ 이상 (나) 동물 5종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어류, 조류, 갑각류) 5점 이상 (나) 박제 제작기구 1인당 1조이상 (3) 모피피혁과정 (가) 화공약품 처리장 15㎡ 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10. 환 경 (냉동, 열관리, 냉·난방) |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각 1대 이상 (2) 소음진동측정기 2대 이상 (3) 수질검사 시험기 2대 이상 (4) 보일러 4종 이상(부속장치 포함) (5) 버너 4개 이상 (6) 개스분석기 1개 이상 (7) 소방 및 가스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등 5종 이상 (8) 냉동 유니트 1종 이상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 2대 이상 | |

| 분 야 | 계 열 | 교 습 과 정 |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비 고 |
|-----|-----|--------------------------------------|--|-----|
| | | | (10) 진공펌프, 회전식 압축기 각1대이상 (11) 밀폐형압축기 2대 이상 (12) 증발기, 응축기 2대 이상 (13) 기타 부속기기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11. 공 예 (11-1,공예· 도예)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11. 공 예 (11-2,귀금속 가공·보석 감정)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보석감정과정 (가) 현미경 10~40배 1인당 1대 (나) 굴절계 1인당 1대 (다) 정밀저울 3인당 1대 (라) 전자저울 3인당 1대 (마) 분광기 2인당 1대 (바) 자외선기 2대 이상 (사) 이색경 2대 이상 (아) 각종 보석류 2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 (2) 귀금속세공과정 (가) 산소용접기 2대 이상 (나) 마모기 2대 이상 (다) 광택기 2대 이상 (라) 전기로 2대 이상 (마) 사출기 5대 이상 (바) 원심주조기 2대 이상 | |

| 분 | 야 | 계 | 열 | 교 | 습 | 과 | 정 | 시 | 설 | · | 설 | 비 | 및 | 교 | 구 | 기 | 준 | 비 | 고 | |
|---|---|---|---|-----|---|---|---|---|---|---|---|---|---|---|---|---|---|---|---|--|
| | | | | | | | | (사) 흡입주조기 2대 이상 (아) 고무모형 압착 2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 | | | | | | |
| | | | | 12. | 안 | 전 | 관 | 리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 | | | | | |
| | | 산 | 업 | 응 | 용 | 기 | 술 | 13. 디 자 인 (13-1,패션디자인) |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2) 축소·확대복사기 1대 이상 (3) VTR 1대 이상 (4) 에어브로쉬 1Set 이상 (5) 모타 미싱 10대 이상 (6) 패턴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7) 스팀아이롱 5대 이상 (8) 인대 5대 이상 (9) 컴퓨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 | | | | | |
| | | | | 13. | 디 | 자 | 인 | (13-2,산업디자인)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컴퓨터 1대 이상 (다) 실습용컴퓨터 2인당 1대 이상 | | | | | | | | | | | |

| 분 야 | 계 열 | 교 습 과 정 |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비 고 |
|-----|-----|-----------------------|--|-----|
| | | | (3) 컴퓨터디자인과정 (가) 컴퓨터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나) 스캐너 1대 이상 (다) 칼라프린터 1대 이상 (라) 플로터 1대 이상 (마) VTR 1대 이상 (바) TV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14. 이·미용 (14-1,미용)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실습대(4인용 이상) 5대 이상 (2) 건발기, 파마기, 마네킹(고정대 포함), 미용의자,화장대 각 10조 이상 (3) 안면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각 1종 이상 (4) 대형거울 2개 이상 (5)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14. 이·미용 (14-2,이용)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10개 이상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바리캥, 면도, 가위 각 10대이상 (5) 대형거울 : 이발의자수와 상응하는 개수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분 | 야 | 계 | 열 | 교 | 습 | 과 | 정 | 시 | 설 | 비 | 및 | 교 | 구 | 기 | 준 | 비 | 고 | |
|---|---|---|---|-----------|----|---|---|------|----|------------------|--------------|------------------|-------|-----|------------------|------|---|---|
| | | | | 15. | 식 | 음 | 료 | 가. | 시 | 설 | | | | | | | | |
| | | | | (15-1,조리) | | | | (1) | 조 | 리 | 실 | 60m ² | 이 | 상 | | | | |
| | | | | | | | | 나. | 설 | 비 | 및 | 교 | 구 | | | | | |
| | | | | | | | | (1) | 조 | 리 | 대 | 4인 | 당 | 1대 | 이 | 상 | | |
| | | | | | | | | (2) | 냉 | 장 | 고(250ℓ) | 이 | 상 | 2대 | 이 | 상 | | |
| | | | | | | | | (3) | 환 | 풍 | 기 | 2대 | 이 | 상 | | | | |
| | | | | | | | | (4) | 각 | 요 | 리 | 별 | 로 | 10인 | 당 | 요 | 리 | 에 |
| | | | | | | | | | 필 | 요 | 한 | 기 | 구 | 1식 | 이 | 상 | | |
| | | | | | | | | (5) | 급 | 수 | 시 | 설 | : | 요 | 리 | 대 | 수 | 에 |
| | | | | | | | | | 상 | 용 | 한 | 수 | | | | | | |
| | | | | | | | | (6) | 제 | 독 | 시 | 설 | | | | | | |
| | | | | | | | | 다. | 기 | 타 | 필 | 요 | 한 | 시 | 설 | . | 설 | |
| | | | | | | | | | 비 | 및 | 교 | 구 | | | | | | |
| | | | | 15. | 식 | 음 | 료 | 가. | 시 | 설 | | | | | | | | |
| | | | | (15-2,제과· | | | | (1) | 실 | 습 | 실 | 60m ² | 이 | 상 | | | | |
| | | | | 제 | 빵) | | | 나. | 설 | 비 | 및 | 교 | 구 | | | | | |
| | | | | | | | | (1) | 시 | 청 | 각 | 교 | 구 | 세 | 트(TV, VTR, 슬라이드) | | | |
| | | | | | | | | (2) | 수 | 직 | 형 | 믹 | 스 | 중 | 형 | 2대 | 이 | |
| | | | | | | | | (3) | 오 | 븐(LPG 또는 전기) | 2장 | 용 | 량 | 1대 | 이 | 상 | | |
| | | | | | | | | (4) | 수 | 평 | 반 | 죽 | 기 | 중 | 형 | 2대 | 이 | |
| | | | | | | | | (5) | 발 | 효 | 실(LPG 또는 전기) | 40장 | 용 | 량 | 1대 | 이 | | |
| | | | | | | | | | 상 | | | | | | | | | |
| | | | | | | | | (6) | 추 | 저 | 울(5kg) | 6대 | 이 | 상 | | | | |
| | | | | | | | | (7) | 비 | 중 | 계, 당 | 도 | 계, PH | 미 | 터 | 계, 수 | 분 | |
| | | | | | | | | | 측 | 정 | 기 | 각 | 1대 | 이 | 상 | | | |
| | | | | | | | | (8) | 습 | 도 | 계, 온 | 도 | 계 | 각 | 4대 | 이 | 상 | |
| | | | | | | | | (9) | 로 | 라(Dough Sheeter) | 1대 | 이 | 상 | | | | | |
| | | | | | | | | (10) | 냉 | 장 | 고(1000ℓ) | 1대 | 이 | 상 | | | | |
| | | | | | | | | (11) | 앙 | 금 | 믹 | 서(중 | 형) | 1대 | 이 | 상 | | |
| | | | | | | | | (12) | 썩 | 크 | 대 | : | 실 | 습 | 실 | 별 | 로 | |
| | | | | | | | | | 2대 | 이 | 상 | | | | | | | |
| | | | | | | | | 다. | 기 | 타 | 필 | 요 | 한 | 시 | 설 | . | 설 | |
| | | | | | | | | | 비 | 및 | 교 | 구 | | | | | | |

| 분 | 야 | 계 | 열 | 교 습 과 정 |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비 고 |
|---|---|---|---|-----------------------|---|-----|
| | | | | 15. 식음료품 (15-3,조주)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학과 식별용) 200종 이상 (4) 양주병(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 | 16. 인 쇄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2종 이상 (2) 활자, 활자판 및 기타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 | 17. 사 진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2) 암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3종 이상 (2) 확대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 | 18. 피아노조율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4대 이상 (2) 조율튜우너, 튜링햄머 각 4대 이상 (3) 스테이사, 스폰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2대 이상 (4) 피아노 4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분 야 | 계 열 | 교 습 과 정 |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기 준 | 비 고 |
|-----|-------------|--------------------|--|-----|
| | 정보처리 기 술 | 19. 통신기기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송수신기 각 1대 이상 (2) 컴퓨터 2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4) 표준발전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20. 정보통신 (정보처리) |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CPU 586 156MHZ급 이상, M/M 16MB 이상, HDD 1.6GB 이상의 컴퓨터 1대 이상 (2) 위 “ (1) ”호와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된 퍼스널컴퓨터 20대 이상 (3) 하드디스크를 갖춘 32Bit 퍼스널컴퓨터 20대 이상 (4) 교육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5) 컴퓨터 회로기판 및 각종 IC류 10대 이상 (6)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1대 이상 (7) 출력을 위한 프린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21. 컴 퓨 터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32Bit 이상의 퍼스널컴퓨터 일시수용 인원 1인당 1대 (2) 프린터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분 야 | 계 열 | 교 습 과 정 |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비 고 |
|-----|------------|------------------|---|-----|
| | 간호보조 기술 | 22. 간 호 조 무 사 |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침대 대인용 2개 이상 소인용 1개 이상 (2) 인체모형 1개 이상 (3) 인체해부 및 생리패도 각 1부 이상 (4)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5)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6) 주사기 10종 40개 이상 (7)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8) 혈압계, 청진기 각 20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개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종 이상 (12) 인공배뇨셀 1종 이상 (13) 기관절개관(Cannula Kit) 1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문화관광 | 23. 영상·음반 |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3) 녹음실 및 기재실 2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타믹스용 VTR 5대 이상 (2) VHS용 VTR 5대 이상 (3) U-메타 VTR 5대 이상 (4) VTR 카메라 10종 이상 (5) 8mm 릴테이프 등 5종 이상 (6) TV 수상기 10대 이상 (7) 조명기구 10종 이상 (8) 간이편집기 자막기 3종 이상 (9) 오디오,더빙용오디오Set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분 | 야 | 계 | 열 | 교 | 습 | 과 | 정 | 시 | 설 | 비 | 및 | 교 | 구 | 기 | 준 | 비 | 고 |
|---|---|---|---|-----|-----|----|---|-----|-----|----|---|---|------------------|-----|---|---|---|
| | | | | 24. | 관 | 광 | | 가. | 시 | 설 | | | | | | | |
| | | | | | | | | | (1) | 실 | 습 | 실 | 60m ² | 이 | 상 | | |
| | | | | | 나. | 설 | 비 | 및 | 교 | 구 | | | | | | | |
| | | | | | | | | | (1) | 관 | 광 | 도 | 서 | 30 | 종 | 이 | 상 |
| | | | | | | | | | (2) | 한 | 국 | 지 | 도 | (50 | 만 | 분 | 의 |
| | | | | | | | | | (3) | 고 | 적 | , | 명 | 승 | 지 | , | 안 |
| | | | | | | | | | (4) | 녹 | 음 | 기 | , | 환 | 동 | 기 | , |
| | | | | | | | | | | 카 | 메 | 라 | 반 | 당 | 각 | 1 | 대 |
| | | | | | 다. | 기 | 타 | 필 | 요 | 한 | 시 | 설 | · | 설 | 비 | 및 | 교 |
| 경 | 영 | 실 | 무 | 사 | 무 | 관 | 리 | 25. | 워드 | 프로 | | | | | | | |
| | | | | | 세 | 스 | | 가. | 시 | 설 | | | | | | | |
| | | | | | | | | | (1) | 실 | 습 | 실 | 60m ² | 이 | 상 | | |
| | | | | | 나. | 설 | 비 | 및 | 교 | 구 | | | | | | | |
| | | | | | | | | | (1) | 입 | 력 | 작 | 성 | 을 | 위 | 한 | 기 |
| | | | | | | | | | (2) | 출 | 력 | 을 | 위 | 한 | 프 | 린 | 터 |
| | | | | | | | | | | 기 | 5 | 대 | 이 | 상 | | | |
| | | | | | 다. | 기 | 타 | 필 | 요 | 한 | 시 | 설 | · | 설 | 비 | 및 | 교 |
| | | | | | 26. | 주 | 산 | 가. | 시 | 설 | | | | | | | |
| | | | | | | | | | (1) | 실 | 습 | 실 | 60m ² | 이 | 상 | | |
| | | | | | 나. | 설 | 비 | 및 | 교 | 구 | | | | | | | |
| | | | | | | | | | (1) | 대 | 형 | 주 | 판 | 2 | 개 | 이 | 상 |
| | | | | | | | | | (2) | 속 | 도 | 측 | 정 | 시 | 계 | 2 | 개 |
| | | | | | | | | | | 이 | 상 | | | | | | |
| | | | | | 다. | 기 | 타 | 필 | 요 | 한 | 시 | 설 | · | 설 | 비 | 및 | 교 |
| 예 | 능 | 예 | 능 | 27. | 무 | 용, | 전 | 통 | 무 | 용 | | | | | | | |
| | | | | | 가. | 시 | 설 | | | | | | | | | | |
| | | | | | | | | | (1) | 실 | 습 | 실 | 60m ² | 이 | 상 | | |
| | | | | | | | | | (2) | 탈 | 의 | 실 | 5m ² | 이 | 상 | | |
| | | | | | 나. | 설 | 비 | 및 | 교 | 구 | | | | | | | |
| | | | | | | | | | (1) | 전 | 축 | , | 녹 | 음 | 기 | 각 | 1 |
| | | | | | | | | | (2) | 대 | 형 | 거 | 울 | | | | |
| | | | | | 다. | 기 | 타 | 필 | 요 | 한 | 시 | 설 | · | 설 | 비 | 및 | 교 |
| | | | | | 28. | 서 | 예 | 가. | 시 | 설 | | | | | | | |
| | | | | | | | | | (1) | 실 | 습 | 실 | 60m ² | 이 | 상 | | |
| | | | | | 나. | 설 | 비 | 및 | 교 | 구 | | | | | | | |
| | | | | | | | | | (1) | 벽 | 루 | 1 | 인 | 당 | 1 | 대 | , |
| | | | | | | | | | | 먹 | 기 | 는 | 도 | 구 | 1 | 인 | 당 |
| | | | | | | | | | | 1 | 대 | 이 | 상 | | | | |

| 분 | 야 | 계 | 열 | 교 | 습 | 과 | 정 |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비 | 고 |
|---|---|---|-----|---|----|---|---|---|---|---|
| | | | | | | | | (2) 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 | 29. | 음 | 악 | | | 가. 시 설 (1) 음악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감상용전축(채널당 출력 20W 이상) 1대 이상 (2) 악기과정 (가) 필요한 악기 5대 이상 (3) 성악과정 (가)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나)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 | 30. | 미 | 술 | |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물대 1개 이상 (2) 화판 및 이젤 일시수용인원 1인당 1개 이상 (3) 서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4) 동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벼루, 모포 등 필요한 시설·설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 | 31. | 모 | 델, | | | 가. 시 설 (1) 실기실 6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모델, 연극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장장치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 | | 연 | 극 | | | | | |

| 분 | 야 | 계 | 열 | 교 습 과 정 |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기 준 | 비 고 |
|---|---|---|---|-----------------|---|-----|
| | | | | 32. 바 둑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 | 33. 꽃기예, 꽃꽂이 | 가. 시 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패도 5종 이상 (2) 실습공구 20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독 | 서 | 실 | | 34. 독 서 실 | 가. 시 설 (1) 열람실 · 시 지 역 120㎡ 이상 · 기타지역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cm, 세로 58 cm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별 표3]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 분 야 | 계 열 | 교습과정 | 일시수용 능력인원 | 비 고 |
|-------------------------|--------|--------------|----------------------------------|---|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1. 기 계 | 40 | 실습실 60㎡기준 |
| | | 2. 자동차 | | |
| | | · 자동차정비 | 40 | 실습실 60㎡기준 |
| | | · 중기운전 | 30 | 실습실 990㎡기준 |
| | | · 중기정비 | 30 | 실습실 45㎡기준 |
| | | · 자동차운전 | 가능교습장 면적및기능 코스규모에 따라 산정 | 가.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만당해 기능 교육장 부지면적 300㎡ 당 1인이내 나. 대형 및 특수반 : 당해 기능코스 1조당 2인이내 다. 제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반: 당해 기능 교육장 부지 면적 50㎡당 1인 |
| | | 3. 화공및세라믹 | 40 | 실습실 45㎡기준 |
| | | 4. 전 기 | 40 | 실습실 45㎡기준 |
| | | 5. 전 차 | 40 | 실습실 45㎡기준 |
| | | 6. 항 공(항공정비) | 30 | 실습실 60㎡기준 |
| | | 7. 토목, 건축 | 20 | 실습실 45㎡기준 |
| | | 8. 의복·섬유 | | |
| · 양재·한복 | 30 | 실습실 45㎡기준 | | |
| · 수예·자수 | 30 | 실습실 45㎡기준 | | |
| 9. 농림(동물) | 20 | 실습실 45㎡기준 | | |
| 10. 환경(냉동, 열관리, 냉난방) | 40 | 실습실 45㎡기준 | | |
| 11. 공 예 | | | | |
| · 공예·도예 | 30 | 실습실 45㎡기준 | | |
| · 귀금속가공· 보석감정 | 30 | 실습실 45㎡기준 | | |
| 12. 안전관리 | 40 | 실습실 45㎡기준 | | |

| 분 야 | 계 열 | 교습과정 | 일시수용 능력인원 | 비 고 | | |
|-----|--------|---------------------------------------|--------------------|---|-------------------------|-------------------------|
| | 산업응용기술 | 13. 디자인 · 패션디자인 · 산업디자인 | 40 30 | 실습실 45m ² 기준 실습실 45m ² 기준 | | |
| | | 14. 이·미용 · 미 용 · 이 용 | 20 30 | 실습실 45m ² 기준 실습실 45m ² 기준 | | |
| | | 15. 식음료품 · 조 리 · 제과·제빵 · 조 주 | 40 40 40 | 실습실 45m ² 기준 실습실 45m ² 기준 실습실 45m ² 기준 | | |
| | | 16. 인 쇄 | 40 | 실습실 45m ² 기준 | | |
| | | 17. 사 진 | 30 | 실습실 45m ² 기준 | | |
| | | 18. 피아노조율 | 30 | 실습실 45m ² 기준 | | |
| | | 정보처리기술 | 19. 통신기기 | 40 | 실습실 45m ² 기준 | |
| | | | 20. 정보통신 (정보처리) | 30 | 실습실 45m ² 기준 | |
| | | | 21. 컴 퓨 터 | 30 | 실습실 45m ² 기준 | |
| | | 간호보조기술 | 22. 간호조무사 | 40 | 실습실 60m ² 기준 | |
| | | 문화관광 | 23. 영상·음반 | 30 | 실습실 45m ² 기준 | |
| | | | 24. 관 광 | 40 | 실습실 45m ² 기준 | |
| | | 경영실무 | 사무관리 | 25. 워드프로세스 | 30 | 실습실 45m ² 기준 |
| | | | | 26. 주 산 | 40 | 실습실 45m ² 기준 |
| 예 능 | 예 능 | 27. 무용, 전통무용 | 20 | 실습실 45m ² 기준 | | |
| | | 28. 서 예 | 30 | 실습실 45m ² 기준 | | |
| | | 29. 음악(피아노) | 20(12) | 실습실 45m ² 기준 | | |
| | | 30. 미 술 | 30 | 실습실 45m ² 기준 | | |
| | | 31. 모델, 연극 | 30 | 실습실 45m ² 기준 | | |
| | | 32. 바 둑 | 30 | 실습실 45m ² 기준 | | |
| | | 33. 꽃기예, 꽃꽂이 | 30 | 실습실 45m ² 기준 | |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p>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부제 교습횟수는 반당 1일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시간이내 교습과정 : 12부제이하(단, 자동차운전학원은 14부제 이하) 2. 2시간 이내 교습과정 : 6부제 이하 3. 3시간 이내 교습과정 : 4부제 이하 4. 4시간 이내 교습과정 : 3부제 이하 5. 4시간 초과 교습과정 : 2부제 이하 6. 중합반(입시 및 검정고시의 전 과목을 종합적으로 교습하는 과정) : 1부제 다만 중합반 교습이 끝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시간 범위내에서 위 각호의 부제를 따로 운영할 수 있다. | <p>② <삭 제></p> | <p>위임근거법령 폐지(영 제10조 제2항)</p> |
| <p>제5조(교습소 부제 교습횟수) 영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부제 교습횟수는 1일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시간 이내 교습 : 8부제 이하 2. 2시간 이내 교습 : 4부제 이하 3. 3시간 이내 교습 : 3부제 이하 4. 3시간 초과 교습 : 2부제 이하 | <p>제5조 <삭 제></p> | <p>위임근거 법령 폐지(영 제16조 제2항)</p> |
| <p>제6조(교육환경정화 등)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원과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위치가 각각 지상 1층의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20미터 이내인 장소 | <p>제6조 <삭 제></p> | <p>위임근거 법령 폐지(영 제4조 제3항 제2호)</p>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p>2. 학원과 유해업소의 위치가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수평거리가 6미터 이내인 수평층과 직근상층 및 직근하층의 장소</p> | | |
| <p>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u>보고</u>)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 <u>보고</u>된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해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p> | <p>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u>통보</u>) ① - ----- ----- <u>채용한</u> <u>때에는</u> ----- ----- <u>통보</u> ----- ----- ② ----- <u>통보</u> ----- ----- <u>10일 이내</u> ----- <u>통보</u> ----- -----</p> | <p>규제완화</p> <p>규제완화</p> |
| <p>제8조(수강료등) ①(생략) ②<u>통보된 수강료 등은 교습과정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u></p> | <p>제8조(수강료등) ①(현행과 같음) ② <u>〈삭 제〉</u></p> | <p>규제완화</p> |
| <p><u>〈신 설〉</u></p> | <p>제10조(우수학원의 지정·육성) 교육감은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u>우수학원을 지정·육성할 수 있다.</u></p> | <p>입법예고의견 (충북학원연합회) 수렴</p> |
| <p><u>〈신 설〉</u></p> | <p>제11조(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u>학원설립·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u></p> | <p>입법예고의견 (충북학원연합회) 수렴</p> |
|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충청북도교육규칙</u>으로 정한다.</p> | <p>제12조(시행규칙) ----- ----- <u>교육규칙</u> ----- -----</p> | |

| 현행 | 개정 (안) | 비고 |
|----|---|----|
| | <p>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p> <p>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99. 1. 18, 법률 제5634호)

| 연번 | 주요 개정 내용 | 비고 |
|----|--|----|
| 1 | ○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과외교습기간 제한 삭제(제3조제2호 후단) :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과외교습기간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내용 삭제 | |
| 2 | ○ 학원의 재개원, 교습소의 재개소 신고 삭제 (제10조 및 제14조제4항) | |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

| 연번 | 주요 개정 내용 | 비고 |
|----|---|----|
| 1 |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거리제한 완화(제4조제3항) :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과 수평거리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삭제 | |
| 2 | ○ 학원의 계열 재분류 및 개설가능 교습과정 확대(제7조의 2) - 교습과정의 분야, 계열 재분류 : [별표1] 학원의 교습과정(제7조의2제1항 관련) 참조 -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 3 | ○ 학원 단위시설 기준 완화(제8조 및 제9조) : 필수시설인 사무실(10㎡이상) 및 양호실(7㎡이상), 휴게실(15㎡ 이상)을 권장시설로 변경 | |
| 4 | ○ 학원 및 교습소 부제교습횟수 제한 폐지(제10조 및 제16조) :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학원 및 교습소 부제 교습횟수를 폐지 | |
| 5 | ○ 학원강사 자격완화(제12조제3항 삭제 및 별표 2) : 대학졸업자의 경우 전공과 관계없이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원강사의 자격을 완화함. | |
| 6 | ○ 교습소의 강의실 면적만 (30㎡이내) 제한 폐지(제16조제1항제3호) : 교습소의 강의실 면적을 3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한 면적 제한 삭제 | |
| 7 | ○ 수강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18조) : 수강료 반환사유, 반환시기 및 반환금액의 세부규정을 정함. | |

관계법령 발췌서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99. 1. 18, 법률제5634호)

제3조(과의교습) 누구든지과의교습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2. 학원에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교습하는 경우.

(후단삭제 : 이 경우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10조(휴원 및 폐원등의 신고) 학원설립·운영자는 당해 학원을 1월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재개원 또는 폐원)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④교습자는 당해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삭제:재개소 또는 폐소)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99. 5. 10, 대통령령제16294호)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등)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개정전>

③법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생략)
2.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과 수평거리 6미터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삭제)

제7조의2(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학원의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1과 같다.

②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원시설) ②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 회의실, 사무실
- 2 ~ 6. (생략)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9조(단위시설의 기준) ①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 1 ~ 3. (생략)
4. (삭제 : 사무실 :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 5 ~ 7. (생략)
8. (삭제 : 휴게실 : 1일 수강자 500인(독서실의 경우에는 1일 이용자 50일)이상인 학원에 두되, 휴식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9. (삭제 : 양호실 : 1일 수강자 또는 이용자 500인 이상인 학원에 두되, 양호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7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10조(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 교습의 금지 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삭제>

<개정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당해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부제교습 횟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부제교습횟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독서실의 정원은 일시수용능력인원으로 한다.

제11조<삭제>

<개정전>

제11조(사회교육전문요원의 배치) 3월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 이상의 사회교육 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1. 전임강사가 20인 이상인 학원
2. 일시수용능력이 500인 이상인 학원

제12조(강사) ②법제 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2 와 같다.

③<삭제>

<개정전>

③강사는 자격증에 표시된 표시과목, 전공분야 또는 전공분야와 유사한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④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사회교육법 ('97. 12 13, 법률 제5454호)

제1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사회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제7조의2제1항 관련)

| 분 야 | 계 열 | 교 습 과 정 |
|-------|--------|---|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
|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
| | 정보처리기술 |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컴퓨터 |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음반,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관광 |
| 국제실무 | 외국어 | 어학, 통역, 번역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 경영실무 | 경영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
| | 사무관리 | 부기, 속기, 속독, 속셈,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서, 경리,펜글씨 |
| 예 능 | 예 능 |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모델,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꽃기에 |
| 입시·검정 | 보통교과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
| 독서실 | 독서실 | |

[별표 2]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

| 구 분 | 자 격 기 준 |
|------|--|
| 일반학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5. - 9.(생략) |

(별첨 3)

| | |
|-----------|-------------------|
| 의안번호 | 제 104-2호 |
| 의결 년월일 | 1999. 8. (제 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 | |
|-------|-------------|
|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출년월일 | 1999. 8. 12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04-2 |
|----------|-------|

제출년월일: 1999. 8. / 2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현행 교육자치법규중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유사성격 조례 인

-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4건의 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로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골자

- 수수료라함은 “배정수수료, 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 (안 제2조제1항)
- 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공개정보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1], 별표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하여야 한다. (안 제4조제1항)
-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안 제5조)

제정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수수료라 함은 배정수수료, 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

②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공개정보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1], [별표2]의 수수료징수 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별표1]의 증명사항으로 여러 건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1건으로 하며,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다 1건으로 하고, 여러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매 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 <1979.7.27 조례 제952호>
2.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1987.8.7 조례 제1552호>
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1971.9.2 조례 제489호>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1968.12.6 조례 제310호>

③ (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2항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별표1]

수수료 징수 금액

(단위:원)

| 구 분 | 종 류 | 기 준 | 수수료 | 비 고 |
|------------------------------------|---------------------------------------|-----|--------|--|
| 1) 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 ○ 중학교 배정수수료 | 1 통 | 300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 제73조, 제89조. |
| | ○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 정수수료 | 1 통 | 300 | |
| 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 보차 선정경쟁 시험수 료 | ○ 응시수수료 - 일반시험 -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 1인당 | 25,000 | 교육공무원임용 후보자선정경쟁 시험규칙 제19조 , 제21조 |
| | | 1인당 | 35,000 | |
| 3)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 ○ 응시수수료 | 1인당 | 10,000 | -고등학교입학자 격검정고시규칙 제12조 -고등학교졸업학 력검정고시규칙 제17조 |
| | ○ 성적증명서 | 1 통 | 300 | |
| | ○ 합격증명서 | 1 통 | 300 | |
| | ○ 과목합격증명서 | 1 통 | 300 | |
| 4) 제증명수수료 | ○ 신원에 관한 사항 - 재직·경력 및 퇴직에 관한 사항 | 1 건 | 300 | 지방자치법 제128조 |
| | - 연수 및 이수 등에 관 한 사항 | 1 건 | 300 | |
| | - 졸업(예정), 재학(제적), 성적등에 관한 증명 | 1 건 | 300 | |
| | ○ 회계에 관한 증명 - 납품 및 공사 사실에 관한 증명 | 1 건 | 300 | |
| | - 원천징수등에 관한 사 항 | 1 건 | 300 | |
| | ○ 기타 공부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 1 건 | 300 | |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령 제18조)

| 공개대상 |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 | | |
|----------------|---|---|--|--|
| | 원본의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문서·대장등 | 0 열람 - 1건(10매기준) 1회: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0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50원 | 0 열람 - 1건(10매기준) 1회: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 0 사본(중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0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도면·카드등 | 0 열람 -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 0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50원 | 0 열람 -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 0 사본(중이출력물) -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0 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녹음테이프 | 0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 0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0 시청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0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녹화테이프 (비디오) | 0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 0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 영화필름 | 0 시청 - 1편이 1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켤(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편이 1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 | | |
| 슬라이드 | 0 시청 - 1컷마다 200원 | 0 복제 - 1컷마다 3,000원 | 0 시청 - 1컷마다 200원 | |

| 공개대상 | 공개 방법 및 수수료 | | | |
|---------|---|--|---|---|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 마이크로 필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건(10컷기준) 1회 : 500원 ·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출력물 : 1매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 1,000원 ※ 대체비용은 별도 | | |
| 사진·사진필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5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화(필름) -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대체비용은 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5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중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 × 5" 50원 5" × 7" 100원 8" × 10" 150원 ○ 복제 - 10분마다 5,000원 ※ 대체비용은 별도 |

(별첨 4)

| | |
|-----------|-------------------|
| 의안번호 | 제 104호 |
| 의결 년월일 | 1999. 8. (제 회) |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 |
|-------|--------------|
|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출년월일 | 1999. 8. 12. |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 |
|----------|-------|
| 의안 번호 | 104-3 |
|----------|-------|

제출년월일 : 1999. 8./27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골자

'98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중 세입결산액은 802,204,003,6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79,826,074,650원이며, 이월사업비 65,461,237,320원, 순세계잉여금 56,905,543,670원, 국고보조금잔액 11,148,000원으로서 총 122,377,928,99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

'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 따로붙임

참고사항

- '98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 따로붙임
- '98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지침 : 따로붙임

(별첨 5)

| | |
|-----------|---------------------|
| 의안번호 | 제 104-4호 |
| 의결 년월일 | 1999. 8. . (제 회) |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 |
|-------|-------------|
|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출년월일 | 1999. 8. 2. |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104-4

제출년월일 : 1999. 8. 14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골자

직업교육확충비 61,575,610원, 수해복구 지원비 31,953,000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88,152,000원, 사망조의금 446,485,000원,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51,833,000원, 손해배상금 26,635,000원으로 총806,633,610원을 지출하였음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 원)

| 건 명 | 지출결정일 |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잔액 |
|---------------|--------------|-------------|-------------|------------|
| 1. 직업교육확충 | '98. 7. 9. | 120,000,000 | 61,575,610 | 58,424,390 |
| 2. 수해복구 지원비 | '98. 8. 24. | 32,000,000 | 31,953,000 | 47,000 |
| 3.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 | '98. 8. 26. | 188,152,000 | 188,152,000 | 0 |
| 4. 사망조의금 | '98. 10. 7. | 446,485,000 | 446,485,000 | 0 |
| 5.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 '98. 10. 7. | 51,833,000 | 51,833,000 | 0 |
| 6. 손해배상금 | '98. 10. 13. | 26,635,000 | 26,635,000 | 0 |
| 합 계 | | 865,105,000 | 806,633,610 | 58,471,390 |

예비비사용 명세서 : 붙임

예비비사용 명세서

1. 직업교육확충

(단위:천원)

| 과 목 | | | | | | 예비비지 출결정액 | 예비비사 용액 | 잔 액 | 비고 |
|-----|-----------|-------------|------|-------------|------------|--------------|------------|--------|----|
|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 목 | | | | |
| 본청 | 학교비 | 학교운영 비 | 고등학교 | 학교운영비 | 학교교 육비 | 100,000 | 51,795 | 48,205 | |
| | 사학지 원비 | 사학운영 지원비 | 고등학교 | 경상교육사 업비 | 민간경 상이전 | 20,000 | 9,781 | 10,219 | |
| 합 계 | | | | | | 120,000 | 61,576 | 58,424 | |

예비비지출 사유

IMF 관리체제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발생한 실직자들에게 공동실습소 및 실업계고교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취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업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함(실업계 8개고교 에서 실시)

2. 수해복구 지원비

(단위:천원)

| 과 목 | | | | | | 예비비지 출결정액 | 예비비사 용액 | 잔 액 | 비고 |
|---------------|-----|-----------|------|-------------|-----|--------------|------------|-----|----|
|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 목 | | | | |
| 보은 교육 청 | 시설비 | 학교시설 비 | 초등학교 | 투자교육사 업비 | 시설비 | 20,000 | 19,953 | 47 | |
| | | | 중학교 | 투자교육사 업비 | 시설비 | 12,000 | 12,000 | 0 | |
| 합 계 | | | | | | 32,000 | 31,953 | 47 | |

예비비지출 사유

'98. 8. 12.~13.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보은지역 수해복구비
 종곡초등학교 담장복구비(31.5m) 7,000천원
 수한초등학교 담장복구비(24m), 운동장토사제거 13,000천원
 원남중학교 담장복구비(55m) 12,000천원

3.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

(단위:천원)

| 과 목 | | | | | | 예비비지 | 예비비사 | 잔 액 | 비고 |
|-----|-----|-------|------|-------|-----|---------|---------|-----|----|
|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 목 | 출결정액 | 용액 | | |
| 본청 | 교육행 | 교육행정기 | 중등교육 | 기관운영비 | 민간경 | 188,152 | 188,152 | 0 | |
| | 정비 | 관운영비 | 국운영 | | | | | | |
| 합 계 | | | | | | 188,152 | 188,152 | 0 | |

예비비지출 사유

- '98년 8월말 사립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 예산액 : 9명 378,000천원
 - 명예퇴직자 : 14명 566,152천원
 - 부족액 : 188,152천원

4. 사망조의금

(단위:천원)

| 과 목 | | | | | | 예비비지 | 예비비사 | 잔 액 | 비고 |
|-----|-----|-------|------|-------|-----|---------|---------|-----|----|
|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 목 | 출결정액 | 용액 | | |
| 본청 | 교육행 | 교육행정기 | 관리국운 | 기관운영비 | 민간경 | 446,485 | 446,485 | 0 | |
| | 정비 | 관운영비 | 영 | | | | | | |
| 합 계 | | | | | | 446,485 | 446,485 | 0 | |

예비비지출 사유

-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34조, 제41조, 제41조의2,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공무원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부족액 지급을 위함
 - 예산액 : 500,000천원
 - 재해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 458명 966,485천원
 - 부족액 : 446,485천원

5.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단위:천원)

| 과 목 | | | | | | 예비비지 | 예비비사 | 잔 액 | 비고 |
|-----|-----------|---------------|-----------|-------|------------|--------|--------|-----|----|
|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 목 | 출결정액 | 용액 | | |
| 본청 | 교육행 정비 | 교육행정기 관운영비 | 관리국운 영 | 기관운영비 | 민간경 상이전 | 51,833 | 51,833 | 0 | |
| 합 계 | | | | | | 51,833 | 51,833 | 0 | |

예비비지출 사유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34조, 제41조, 제41조의2,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공무원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부족액 지급을 위한

- 예산액 : 250,000천원
- 재해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38명 : 301,833천원
- 부족액 : 51,833천원

6. 손해배상금

(단위:천원)

| 과 목 | | | | | | 예비비지 | 예비비사 | 잔 액 | 비고 |
|-----|-----------|---------------|----------------|-------|-----|--------|--------|-----|----|
|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 목 | 출결정액 | 용액 | | |
| 본청 | 교육행 정비 | 교육행정기 관운영비 | 행정관리담 당관실운영 | 기관운영비 | 배상금 | 26,635 | 26,635 | 0 | |
| 합 계 | | | | | | 26,635 | 26,635 | 0 | |

예비비지출 사유

'93.10.21. 18:00경 발생한 제천중학교 화재사건으로 인한 매점 소훼 손해배상 합의배상금 지급을 위한 것임

- 제1심 판결액 : 12,748,915원
- 제2심 판결액 : 14,975,540원
- 소송비용 : 1,086,588원 (원고부담액 2,795,042원 - 피고부담금1,708,454원)
- 제1심 판결액 + 제2심 판결액 - 소송비용 = 26,637,867원

| | |
|--------------|---------------------|
| 의안번호 | 제 104 호 |
| 의 결 년 월 일 | 1999. 8. . (제 회) |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계획안

| |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출년월일 | 1999. 8. / > . |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

| | |
|----------|-------|
| 의안 번호 | 104-5 |
|----------|-------|

제출년월일 : 1999 . 8 . 1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처분사유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공유재산의 처분

0 청주 창신초등학교 잡종재산 매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411번지의 2필지

1,168.2㎡

3. 제안근거

0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서:덧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설 명 자 료 : 별 책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7-1)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m², 천 원)

| 구 | 분 | 상 반 기 | | | 하 반 기 | | | 합 계 | | |
|------------------------|-------------------|-------|-----|-----|-------|---------|---------|-----|---------|---------|
| | | 건수 | 수 량 | 금 액 | 건수 | 수 량 | 금 액 | 건수 | 수 량 | 금 액 |
| 취 득 | 계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1. 매 입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2. 교환 으로취 득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3. 기타 취득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취 득 분 | 계 | 토지 | | | 1 | 1,168.2 | 501,517 | 1 | 1,168.2 | 501,517 |
| | | 건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4. 매 각 | 토지 | | | 1 | 1,168.2 | 501,517 | 1 | 1,168.2 | 501,517 |
| | | 건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5. 양 여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6. 교환 으로취 득 분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매각대상 재산목록(7-4)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천 원)

| 일련 번호 | 재 산 의 표 시 | | | | 금 액 | 매각 시기 | 매 각 사 유 | 매수희망 자 주소 성 명 | 비고 |
|----------|---------------|-----|---------------------|---------|---------|----------|----------------|---------------------|----|
| | 기 관 명 | 구 분 | 소 개 지 | 수 량 | | | | | |
| 1 | 청주 창신 초등학교 | 토 지 |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411외2 | 1,168.2 | 501,517 | 하반기 | 교육환경개선재원 확보 | | 1쪽 |
| 계 | | 토 지 | | 1,168.2 | 501,517 | | | | |
| | | 건 물 | | | | | | | |
| | | 공작물 | | | | | | | |
| | | 임목축 | | | | | | | |
| | | 개 | | | | 501,517 | | |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77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計劃(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 관한法律 제10조(公示地價의 適用)

제10조(公示地價의 適用) ①國家·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가 다음 各號의 目的을 위하여 土地의 價格을 算定하는 경우에는 당해 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여 당해 土地의 價格과 標準地의 公示地價가 均衡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算定된 地價를 다음 各號의 目的에 따라 加減調整하여 適用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삭제
4.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희지의 매수 또는 동법 제21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5. 징발법에 의한 토지의 징발에 대한 보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교육감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별첨 7)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서(안)
설 명 자 료

창신초등학교 토지 처분 위치도

| 용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m ²) | 금액(천원) | 사유 |
|------|----------------|-----|----|---------------------|---------|--------|
| 잡종계산 | 경주시 흥덕구 사창동 | 411 | 대지 | 902.2 | 392,457 | 교육환경개선 |
| | | 417 | 대지 | 137.9 | 56,539 | 재원확보 |
| | | 418 | 대지 | 128.1 | 52,521 | |
| 계 | | | | 1,168.2 | 501,517 | |



(별첨 8)

(제104회 임시회)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8. 27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8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1999년 8월 23일
- 다. 상정일자 : 1998년 8월 23일(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3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4일)
 -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6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개정사유

급격한 사회변화와 직종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령이 개정('99.1.18. 법률 제5,634호, '99.5.10. 대통령령 제16,294호)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학원 운영의 자율성과 주민의 평생교육 기획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안 제2조제2항 별표 2).
-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토록 하고, 학원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안 제5조).
-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수평거리가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학원의 설립 제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6조).
-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로 완화하고, 해임 통보기한을 5일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학원 수강료의 1년이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은 폐지함(안 제8조제2항).

- 우수학원 지정·육성 조항 신설(안 제10조).
-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조항 신설(안 제11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 개정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주로 논의되어 당부드릴 사항은,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일부 시·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 받은 다음 실효성이 있다면 차후 동 조례안의 개정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망하며,

또한 금번 조례개정으로 신설된 '우수학원 지정·육성'에 대하여는 대상학원 선정 기준과 방법, 육성방안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동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학원수강료의 1년이내 변경을 금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학원수강료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등 그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학원수강료 안정에도 보다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9)

(제104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8. 27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8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1999년 8월 23일
- 다. 상정일자 : 1998년 8월 23일(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3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4일)
 -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6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개정사유

현행 교육자치법규중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유사성격 조례인

-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4건의 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로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수수료라함은 “배정수수료, 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
공개수수료”를 말한다(안 제2조제1항).
- 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공개정보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1],[별표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
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안 제4조제1항).
-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
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안 제5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조례안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자치입법 운용상의 실효성과 관련 조례 난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10)

(제104회 임시회)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 사 보 고 서

1999. 8. 27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목 차

| | |
|-------------------------------|-----|
| 1. 심사경과 | 95 |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 95 |
|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 | 95 |
|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96 |
| 5. 토론 주요내용 | 96 |
| 6. 심사보고 주요내용 | 96 |
| 7. 심사결과 | 100 |
|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100 |
| 9. 기타 필요한 사항 | 100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8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1999년 8월 23일

다. 상정일자 : 1999년 8월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소위원회(1999년 8월 23일)

○ 제2차 소위원회(1999년 8월 25일)

○ 제3차 소위원회(1999년 8월 26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98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중 세입결산액은 802,204,004천원, 세출결산액은 679,826,075천원이며,

○ 이월사업비는 65,461,237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6,905,544천원, 국고보조금잔액 11,148천원으로써 총 122,377,929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

: [결산검사 의견서]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5.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예산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세계잉여금 |
|-------------|-------------|-------------|-------------|-------------|
| 742,536,572 | 802,471,662 | 802,204,004 | 679,826,075 | 122,377,929 |

- '98.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802,471,662천원('97.이월사업비 59,935,090천원포함) 이며,
- 세입결산액은 802,204,004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9% 수납되었으며,
- 세출결산액은 679,826,07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4.7%를 집행하였고,
- 세계잉여금이 122,377,929천원이 발생되어 이중 65,461,237천원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 충당되고 11,148천원은 국고보조금 잔액이며 나머지 56,905,544천원은 다음년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음.
 - 명시이월사업비 : 18,591,687천원
 - 사고이월사업비 : 22,730,809천원
 - 계속비이월 : 24,138,741천원
 - 순세계잉여금 : 56,905,544천원
 - 국고보조금 잔액 : 11,148천원

나. 세입결산

(단위 : 천원)

| 예산현액 | 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예산현액 대비 정수율 | 정수결정액 대비 정수율 |
|-------------|-------------|-------------|--------|--------|-------------|--------------|
| 802,471,662 | 802,315,671 | 802,204,004 | 29,695 | 81,972 | 99.9% | 99.9% |

○ '98.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총 802,315,671천원을 정수결정하여 802,204,004천원이 수납되고 29,695천원의 불납결손과 81,972천원이 미수납 처리됨으로써 예산현액 및 정수결정액 대비 각각 99.9%의 정수율을 보이고 있는 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의존수입 658,701,777천원(82.1%)
 - 자체수입 143,502,227천원(17.9%)으로,
-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는 약간 상향된 것으로 나타남.

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율 | 불용율 |
|-------------|------------|-------------|-------------|-------------|------------|-------|------|
| 742,536,572 | 59,935,090 | 802,471,662 | 679,826,075 | 65,461,237 | 57,184,350 | 92.9% | 7.1% |

'98.세출결산은 지출액이 679,826,07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4.7% 집행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5,461,237천원으로 예산현액의 8.2%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57,184,350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1%인데,

○지출액 679,826,075천원의 내용을 관별로 살펴보면,

- 교육위원회비 644,402천원(0.1%)
- 급여관리 435,987,586천원(64.1%)
- 교육행정비 16,104,835천원(2.4%)
- 교육사업비 7,307,456천원(1.1%)
- 학교비 66,419,256천원(9.8%)
- 사학지원비 45,455,894천원(6.7%)
- 시설비 107,906,646천원(15.8%)

전년도 대비 관별 점유율은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임.

○다음년도 이월액 65,461,237천원의 관별 내용은,

- 교육행정비 110,477천원(0.2%)
- 교육사업비 464,026천원(0.7%)
- 학교비 4,991,198천원(7.6%)
- 사학지원비 4,070,869천원(6.2%)
- 시설비 55,824,667천원(85.3%)으로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공사임.

○불용액 57,184,350천원의 관별 내용은,

- 교육위원회비 61,315천원(0.1%)
- 급여관리 20,339,955천원(35.5%)
- 교육행정비 1,438,191천원(2.5%)

- 교육사업비 1,148,217천원(2.0%)
- 학 교 비 5,011,815천원(8.8%)
- 사학지원비 1,926,436천원(3.4%)
- 시 설 비 14,991,260천원(26.2%)
- 제지출경비 3천원(0.0%)
- 예 비 비 12,267,158천원(21.5%)으로써

예산현액에 대한 총불용비율이 7.1%로 '96년도에 4.6%, 전년도 5.6%에 비해 다소 높아 졌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급여관리(인건비), 학교비, 시설비, 예비비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관별 점유율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급여관리 및 교육행정비가 1.3%, 교육사업비는 0.2%, 시설비는 1.6% 증가한 반면 학교비는 1.9%, 사학지원비는 1.1%, 예비비는 0.1% 감소하였음.

라. 이월비 결산

(단위 : 천원)

| 명 시 이 월 | | 사 고 이 월 | | 계 속 비 이 월 | | 계 | | 비 고 |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 37 | 18,591,687 | 32 | 22,730,809 | 1 | 24,138,741 | 70 | 65,461,237 | |

'98.이월비는 명시이월 37건에 18,591,687천원, 사고이월 32건에 22,730,809천원, 계속 비이월 1건에 24,138,741천원, 총 70건에 65,461,237천원으로, 그 기관별 내용은,

- 본 청 23건 39,868,292천원(60.9%)
- 지역교육청 47건 25,592,945천원(39.1%)임.

마. 예비비 결산

(단위 : 천원)

| 사 업 명 | 지출결정일 | 예 비 비 지출결정액 | 예 비 비 지 출 액 | 잔 액 | 비 고 |
|------------|-----------|-------------|-------------|--------|-----|
| 직업교육확충 | '98. 7. 9 | 120,000 | 61,576 | 58,424 | |
| 수해복구 지원비 | '98. 8.24 | 32,000 | 31,953 | 47 | |
|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 | '98. 8.26 | 188,152 | 188,152 | 0 | |
| 사망조의금 | '98.10. 7 | 446,485 | 446,485 | 0 | |
|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 '98.10. 7 | 51,833 | 51,833 | 0 | |
| 손해배상금 | '98.10.13 | 26,635 | 26,635 | 0 | |
| 합 계 | | 865,105 | 806,634 | 58,471 | |

위 6건의 예비비 지출은 금회 제104회 임시회에 안전으로 제출된 "1998년도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임.

바.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채 권

(단위 : 천원)

| 종 류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중 발 생 액 | 당해연도중 소 멸 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비 고 |
|-----|-------------|----------------|----------------|--------------|---------|
| 대지료 | 0 | 4,121 | 0 | 4,121 | 대부료 미납 |
| 대가료 | 0 | 4,989 | 0 | 4,989 | 대부료 미납 |
| 수업료 | 0 | 70,330 | 0 | 70,330 | 세입금 횡령 |
| 잡수입 | 0 | 2,532 | 0 | 2,532 | 대부료 연체료 |
| 계 | 0 | 81,972 | 0 | 81,972 | |

○채 무 : 해당사항 없음.

사. 재산의 결산

○공유재산

(단위 : 천원)

| 구분 재산별 | '97년도말 현재액 | '98년도 증 감 | | '98년도말 현재액 | 비 고 |
|-----------|---------------|------------|------------|---------------|-----|
| | | 증 | 감 | | |
| 합 계 | 1,476,624,226 | 98,564,714 | 19,374,896 | 1,555,814,044 | |
| 행정재산 | 1,458,796,571 | 88,652,789 | 13,923,680 | 1,533,525,680 | |
| 잡종재산 | 17,827,655 | 9,911,925 | 5,451,216 | 22,288,364 | |

공유재산의 '9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79,189,818천원이 증가된

1,555,814,044천원인데 이를 구분하여 보면,

- 행정재산의 '97년도말 현재액은 1,458,796,571천원으로 '98년도에 88,652,789천원
이 증가되고 13,923,680천원이 감소되어 '98년도말의 현재액은 1,533,525,680천원
이고,
- 잡종재산의 '97년도말 현재액은 17,827,655천원으로, '98년도에 9,911,925천원이
증가되고 5,451,216천원이 감소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은 22,288,364천원임.

○물 품

(단위 : 천원)

| '97년도말 현재액 | | '98년도 증 감 | | | | '98년도말 현재액 | |
|------------|------------|-----------|-----------|-----|-----------|------------|------------|
| | | 증 | | 감 | | |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8,788 | 44,509,263 | 1,765 | 9,700,034 | 714 | 4,294,798 | 9,839 | 49,914,499 |

물품의 '98년도말 현재액은 9,839점에 49,914,499천원으로, '97년도말 현재액 8,788점 44,509,263천원에 비하여 '98년도에 1,765점 9,700,034천원이 증가되고, 714점 4,294,798천원이 감소되었음.

아. 금고의 결산

(단위 : 천원)

| 총 수입 | 총 지출 | 차인잔액 | 비 고 |
|-------------|-------------|-------------|--|
| 802,204,004 | 679,826,075 | 122,377,929 | ○결산전 다음년도 세입 이입액은 122,377,929천원이며, 금고 예치금은 없음. |

'98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누계액은 총 수입이 802,204,004천원이고, 총 지출이 679,826,075천원이며, 차인잔액이 122,377,929천원으로 차인잔액 모두가 결산전에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는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과 일치함.

자.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세출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규정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집행지침 등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기관의 경비와 운영비를 절감하여 IMF 상황하에서 긴축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으로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시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시행을 추진하여 연도말에 완공될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 교육시설이 부실하게 시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교육사업이 유보 또는 취소될 경우 시급한 교육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경정예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참석 5명, 찬성 5명).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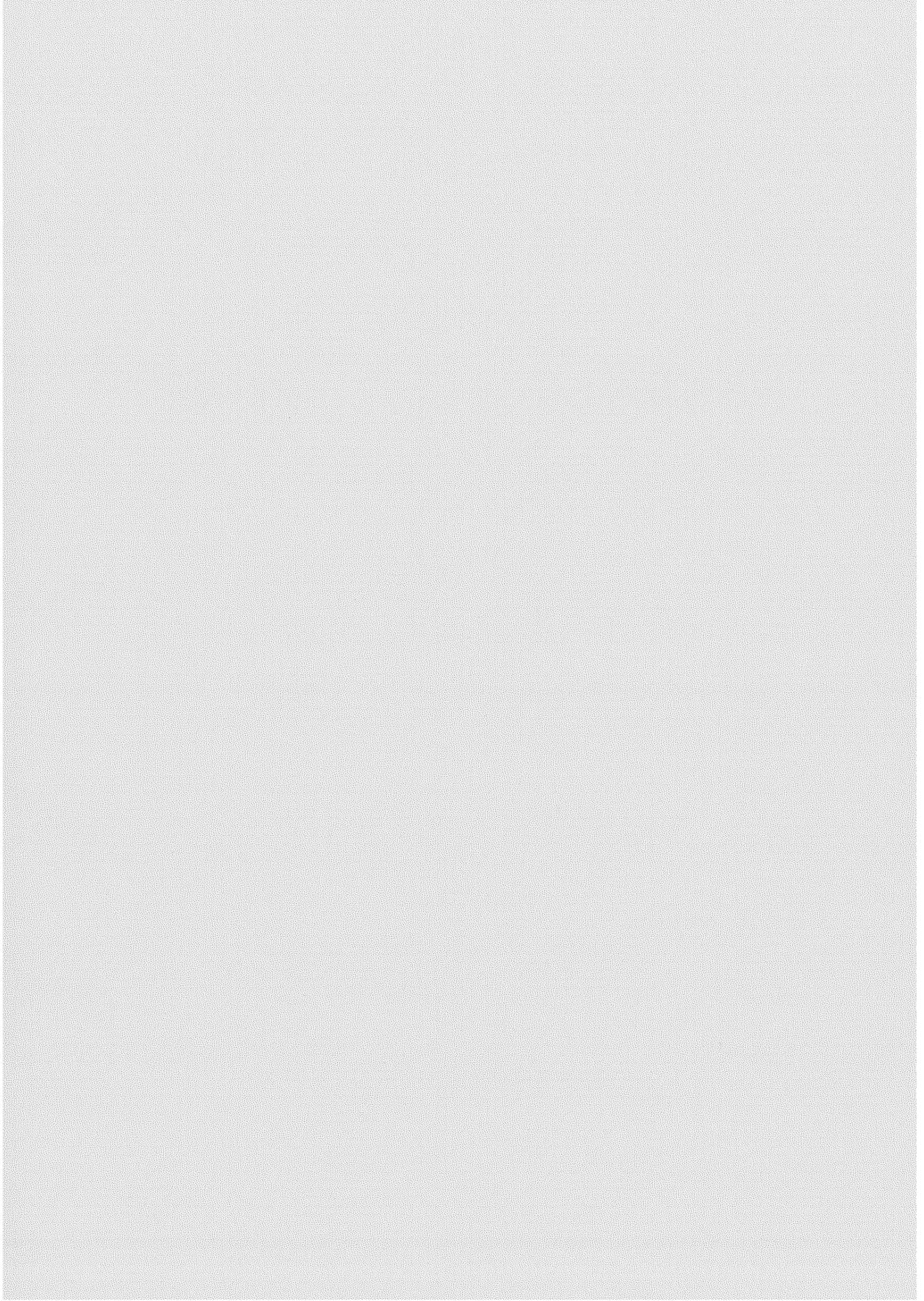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第10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99.8.23 ~ 8.26.)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 |
|--|----|
| I.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3 |
| II.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7 |
| III.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33 |
| IV. 부 록 | |
| 1. 의사일정(안) | 37 |
| 2. 학원조례개정 설명자료 | 39 |
| 3. 서면답변서 | 43 |
|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 | 51 |
|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안) | 55 |

條例 審查 小 委員 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年 8월 23일 (월요일) 11시 31분

議事日程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조례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31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승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
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1시 31분)

● 위원장 직무대행 승진하

바로 이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
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이기수 위원

이충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이충원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원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교대)

● 위원장 이충원

고맙습니다. 연초에 토정비결을 보니까 8월 하순경에 감투쓸 변화가 있어요. 아, 이 감투구나 해서 제가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하지만 조례소위원회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33분)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같은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조금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그것도 구두호천이예요?

● 이기수 위원

송진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충원

이런 일은 별로 없는데 가장 연장자이시고 저보다

● 송진하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안 하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송진하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하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지요.

● 간사 송진하

간사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35분)

● 위원장 이충원

다음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원장인 본인이 제안하도록 하겠

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26일 사흘간으로 하여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

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30분에 조례안 2건에 대해 집행청 관계관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충원, 간사 송진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이기수, 이상일.

○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8월 24일 (화요일) 10시 38분

議事日程 (제104회 임시회 제2차 조례소위원회)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10시 38분 개회)

결로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충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드린 데에는 학원조례에 대한 것이 먼저 나와 있었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그 뒤로 미루고 바뀌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가급적이면 12시에 끝나는 걸로 모든 걸 관심있게, 속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10시 39분)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이미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조례안에 직접 관여하시고 성안하신 총무과장님께서 좀 미진한 점을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총무과장 이기수입니다.

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을 내게 된 것은 저희 징수조례가 4건이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수수료 조례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행정의 여러 갈래로 있어가지고 수수료의 번잡성이 있는 것을 좀 단일화해가지고 하나로 해서 간편하게 하고 수수료 징수하는데 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4개를 하나로 합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있던 4개를 폐지하고 하나를 조례안을 신설해 가지고 합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금액이나 그런 건 하나 변동없고 그대로 합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당부드릴 말씀은 회의기록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마이크를 앞당겨서 말씀하셔야 녹음이 잘 되고, 역시 답변하시는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답변에 들어가시기 전에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기록에 남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들의 좌석순

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를 첫 번째에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예,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이 4건을 한건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이기수

예.

● 김광수 위원

그 4건이라고 하는 것이 별표 1에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기수

예, 거기 있으면 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징수조례, 고등학교입학자격및졸업학력검정고시징수조례, 그래서 이것이 별표에 있는 것은 수수료 징수금액 내용이고 여기에 4개의 조례원안은 부치진 않았습니디. 그러니까 이 별표에 있는 건 4개 조례.....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제목은 그렇잖아요?

● 총무과장 이기수

예.

● 김광수 위원

그 내용이 금액이 수수료가 나와서 그렇지 그 조례의 명은 그 앞에 있는 구분이 4개 나온 거 그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기수

예, 맞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아주 불편한 점은 뭐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기수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조례가 산발적으로 여러가지 있는 것을 이것을 통합할 건 통합하고, 또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었고, 뭐 따로 있어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큰 불편이 꼭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례가 여러가지로 있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고 제정하고 하는데도 불편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면은 4개에서 하나로 통합했을 적에 제목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기수

예, 하나로요.

이것은 신설을 하나 하면서 과거의 4개는 삭 폐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하나로 그렇게 만들면서 이제 여기 있던 것을 각 1항, 2항, 3항, 4항해서 두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기수

별표로다 이제 나옵니다. 수수료 징수금액 같은 것이 뒤로다가, 지금 몇쪽을 보시냐하면 4쪽, 5쪽 이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게 나옵니다.

● 김광수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손위원님

● 손만재 위원

됐습니다. 저는.

● 위원장 이충원

송진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송진하

별 얘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이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조례안에 수수료가 전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 건별로 액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300원이라든지, 200원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사실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걸 올린다면 꼭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금액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번거롭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조례를 제정해 논다면 그걸 집행청에서 그냥 협의로 끝나서 금액정도를.....

● 총무과장 이기수

배정수수료는 주민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서 금액이 올라가나 내릴 적에는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걸 임의로 내렸다 올렸다 할 수가 없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200원, 300원, 건수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여기 보면 배정수수료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300원, 고등학교도 300원이고 교원임용고시 같은 경우는 일반교과는 2만 5천원, 실기 부과되는 교과는 3만 5천원이고,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1만원, 그리고 증명수수료는 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하고 도 균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도청하고도 그렇고 각 시·도교육청하고도 그렇고 그걸 다 참작을 해서 적정선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더라도 전국을 봤을 때 한 중간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이걸 주민부담을 임의로 올릴 수는 없고 조례개정은 해야 됩니다.

● 이기수 위원

한건 한건 할 때마다

● 총무과장 이기수

네,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이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나왔던 것 한가지만 더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별표1 수수료 징수금액 2항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 그게 이제 일반시험은 2만 5천원, 실기가 따르는 시험은 3만 5천원 그런데 대개 이것을 가지면 국고보조나 교육청의 보조 없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그 경비로 대개 마감이 됩니까?

● 총무과장 이기수

네, 1대1 경비가 됩니다.

● 이상일 위원

1대1 경비가 됩니까?

● 총무과장 이기수

이것은 좀 달라서 임용고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를 그대로 거의 다 집행을 하고, 국고라든지 자체자본을 더 투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요 근래에 각종 공공요금도 현실에 맞게 인상한다고 모두들 그러는데 꼭 올려서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1대1 경비로 부족하지. 압도록 적기 적기에 인상할 것은 인상하고 그래야지 괜히 누적 돼가지고 한꺼번에 듬뿍 올리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조정을 하는게 좋지 않은가.

● 총무과장 이기수

현재는 부족하지 않고 곧 증설되는 것 범위내에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 외에 보충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1분)

● 위원장 이충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역시 어제 제안설명은 들으셨기 때문에 본 개정안에 대해서 별 특별한 뭐가 없겠지만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님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보충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학원조례개정 설명자료 - (별첨2)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학원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충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해도 괜찮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이상일 위원

준비되신 이기수위원님부터 하시지요.

● 이기수 위원

네, 그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원에 대한 조례 이견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 상위법개정에 관련해서 그쪽 측면을 감안한 것과 또 규제완화 측면과 또는 입법예고에 의한 의견수렴을 해서 세가지 통합해서 만든 얘기 같은데 규제완화 쪽에서 학원수강료 1년이내의 변경금지한 규정을 폐지하면 수시로 학원 요금을 올린다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지 않아요? 1년이란 기간이 별로 길지도 않은 얘기인데 학원수강생들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원래 변경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대개 올리지 못하게끔 금지한 조항인데, 그러면 이 조항을 폐지한다면 한 3개월이나 6개월만큼 자주 올린다면 요새 자꾸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자꾸 올라가고 이러는데 결국은 이 조항이라는 얘기는 수강학생들 보호하기 위한 조항일텐데 이걸 풀어줌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수혜자들이 더 부담을 갖게 되고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이런 규제는 남겨두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학원연합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학원측에서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서 집행청에서 감독하는 분들이 인력이 미치지 못할는데 스스로 자율정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대개 강원도를 제외해 놓고는 자율정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먼저 선택해 가지고 스스로 정화하는 그러니까 타율에 의해서 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에 의해서 정화하는 이런 제도는 한번 만들어서 적극 발전시키는 것도 좋을 듯 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한 분, 한 분에 대한 답변 간단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여쭙보겠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미 제안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래서 지금 그 안 중에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을 국가적인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로 단속권한을 가급적이면 풀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걸 학원연합회에도 이러한 어떠한 권한을 줬을 때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이 5,60%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비회원들을 포괄적으로 계도를 갖다가 학원연합회에서 장악을 한다고 한다면 그 민원의 소지가 있고 굉장히 반발의 소지가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또 교육청의 국가적인 사업에서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학원한테 어떤 그런 것을 할 때는 이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운 것이 반발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마냥 학원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어떤 권한을 거기다 전부 주었을 때 그 민간의

한 50%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자기 쪽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포괄적으로 거기다 둔다고 할 때에는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오지 않느냐, 이런 데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 다음 번 문제는 한번더 말씀하시고 제가 잠깐 질의하게끔 그 다음 학원수강료 1년내에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여길 보면 학원수강료의 1년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을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강료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다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 이기수 위원

거기는 규제완화관련에 해냈거든요. 상위법은 위에 관련해서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래서 수강료 조정에 심의를 거쳐 조정을 면할 수가 있는 그 조항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럼 상위법에서 폐지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 그 규제완화 쪽에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기 이기수위원님 우리 담당 사무관님이 여기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님이 총괄을 하고 여기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제조항 같은 것은 좀 대

신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저 이게 말입니다. 상위법에 관련된 조항이라면 얘기할 것이 없는 얘기고, 그 사실 모법을 위반한 조례는 안되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한 것이 그렇게 됐다면 그건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것은 안 할 수도 있는 얘기가 그것은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대봉

그래서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주관하신 사무관님이 오셔야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상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었다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도교육청 자체내에서 규제완화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했다든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손질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평생교육담당 임종복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년 이내에 금지하도록 한 규정자체가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강료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에는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 수강료조정위원회, 또 지역교육청에 수강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 이기수 위원

그런데 그런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학원에서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올리진 않겠지만 사실 1년이란 기간이 긴 기간도 아니고 결국은 몇 개월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풀어줌으로 해서 수시로, 아마 충북에 학원이 2천여개, 청주만 해도 1천개가 넘을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네, 넘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럼 그 학원들이 항시 학원요금 인상하는 문제를 이 집행청에서 감시·감독하기도 어려운 얘기고, 솔직히 지금 수시로 물가가 상승되고, 이렇게 하는데 1년이란 기간은 그게 긴 기간도 아니니까 1년 단위로 묶어두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걸 터줌으로 해서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얘가지요.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이기수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강료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됐느냐하면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먼저 정하고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된 금액이 과다하다든

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료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명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관계는 지난번 저희들 대전시교육청에서 실무자들끼리 얘기가 나왔을 때도 논의가 됐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원관계법이 규제 쪽이 강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차제에 강력하게 완화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1차적으로 5월에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만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서 지금 또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능한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글쎄, 규제완화도 필요한 것은 규제해야 되겠고, 필요 없는 것을 완화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원장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것이 과다했을 경우만 조정위원회에서 관여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상당히 자율권이 학원원장한테 주어지는 얘기인데 그러면 1년 단위란 얘기는 상당히 길지도 않은 것을 풀어줌으로 해서 수많은 학원들이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자율정화위원회 문제는 자율정화위원회라는 것을 둔다는, 또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

서 거기에 일정한 부분을 정확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어져서 그게 집행청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잠식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주어지는게 아니니까, 그건 집행청에서는 자율정화위원회를 규제하고 자율정화위원회는 어느 범위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 해서 자율적인 정화를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오히려 타율에 의해서 정화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이면서 또는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답변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같이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충원

죽 한마디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시지요.

이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의 맨 밑에 칸에 보면 입법예고 의견수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연합회 충청북도지회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우수학원의 지정과 육성조항을 신설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학원을 우수학원으로 지정해서 육성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지금 조례는 우선 '교육감은 건전한 학원 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학원을 지정·육성할 수 있다.'해서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저희들이 각 시·도 저기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수학원 지정·육성 관계는 서울, 인천, 대전, 경남 등에서 그 조항을 신설을 해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우수학원을 지정해서 육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 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진흥은 이것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등지에서도 이런 규정을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현재 학원이 어떤 측면에서는 불법운영이 만연되고 있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사회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스스로 뭔가 학원 사회가 정확도 되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이상일 위원

네, 그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수학원을 지정할 때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우수업체로 지정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지정을 해주고 왜 우리는 지정을 안 해주느냐 하는 어떤 불평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때 대단히 상세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어느 기준에 얼마이

상 도달해야 우수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겠다든가 이런걸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민원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고, 또 실제로 지정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추천도 받고 이런 절차를 취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상일 위원

두번째로 아까 이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학원연합회에서 저희들에게 어떤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학원자율지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알아봤더니 지난 '93년도에 충주교육청에서 이걸 한번 시범으로 시행을 해본 일이 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만 해도 학원수가 아마 40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담당하시는 장학사님하고 전부가 세분밖에 안계신다고 그래요. 그 학원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그 세분이 과연 400개의 학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학원업자들하고 물리적인 마찰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에게 자율권을 줘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걸 '93년도에 충주교육청에서 실시했을 때 결과가 어땠느냐, 해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 조례에 그런 규정이 안들어가 있으니까 다음 교육장님이 바뀌었을 때 '왜 이

건 이렇게 하느냐고 치우라'고 그래서 사라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요식업조합 같은 것도 상당부분에 권한을 시청으로부터 위임 받아가지고 자율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보건중 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차제에 규제완화차원에서 우리 학원에 관한 문제도 일단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답변은 아까도 제가 보충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조례로 규정하기 보다도 학원건전운영위에서 자율정화위원회를 활성화 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원의 5,60%가 그걸 굉장히 너무 국가적인 상황에서 풀어주는 판인데, 그걸 자꾸 도교육청, 학원연합회 자율로 해서 또 한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도 뭐 원칙적으로 잘만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인위적으로 한 5,60%가 반대를 하고 있는 학원이 더 많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상일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제가 조금 법적인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

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 조례나 규칙에서 정해야 할 그런 사항이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위임이나 위탁에 관한 규정은 일반 근거법으로는 정부조직법하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런데 그 정부조직법에서 보시면 제6조에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해서 제3항에 보면 행정기관은 여기에서도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어떻게 정해 냈냐 하면 민간위탁의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 11조에 정해 놨는데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해서 1호에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호에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호에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또 4호에는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이렇게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원연합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우선 첫째 불법운영 학원

에 대한 조사·조정, 또 허위과대 광고 조사 및 조정, 무등록·무인가 불법교습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고발 등에 업무를 위탁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항이 과연 법적인 어떤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검토를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조례규칙에 정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학원의 설립운영자와 강사에 대한 연수를 명문화 시켰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 지도·감독의 일부라고 생각되는 충청북도학원연합회에서 제시한 이 의견이 나름대로 저기가 되려면 우선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알겠습니다. 답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진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송진하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여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는 법률로 이미 시행령까지 정해진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네, 규칙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 간사 송진하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하는 거지요, 앞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네, 지금 중요한 내용은 시행령 폐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로 개정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자율지도정화위원회 문제만 학원연합회에서 의견제시 했는데, 그 세가지를 했는데 두가지는 반영을 시키고 한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렵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항을 가지고 있는 시·도가 강원도에서 한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 위원장 이충원

그건 가지고 있으니까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보면 제36조에 사무의 위임·위탁 등 해서 제3항에서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강원도에서는 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이 조항 하나만 가지고 조례나 규칙에 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규칙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일반 근거규정이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그 위탁을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부에

서도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원수가 너무 많고,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시단위가 우선 그런 입장인데요. 대도시는 저희들보다도 더 큰 도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알고 있고, 또 이번 개정 그 아까 말씀드린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지금 전면개정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학원총연합회를 통해서 의견도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교육부에서도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나 이런 걸 보고서 규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는 법령에 뚜렷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 간사 송진하

그래서 제 생각도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하고 권한을 위임한다 하는 것은 별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청에서 잘 생각해서 가지고 학원연합회에서 요구하는 문제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네, 손만재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만재 위원

교육위원 손만재입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과장님께서 전에 설명하실 때에 그 동안에 조례개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주옥 말씀을 하셨어요. 1999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 20일간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이 본도에서 하신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손만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개정안을 받아 본 것은 1주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하실 때에 이런 내용을 교육위원들에게 통보라도 해 주시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게 하려면 입법예고를 할 때 교육위원들에게 이 내용을 보내 주셨으면 우리가 더 심도있는 조사나 연구가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죄송합니다.

● 손만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입법예고가 아니라면 몰라도 입법예고를 어차피 할 바에는 아무리 권한이 없는 교육위원들이라도 그 내용을 좀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수 부의장님하고 지금 이상일위원장님, 송진하위원님 모두 말씀을 하신 것에 중박이 되는 것이 있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만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라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학원운영의 자율성과 주민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교구의 기준이나 학습시간 연장, 부제교습횟수 폐지,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거리규정 폐지 등 학원의 자율성을 많이 인정해 주는 쪽으로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학원이 난립될 이런 소지는 없으시겠는지, 저는 이 규제가 너무 완화되니까 너무나 없이 학원을 전부 만들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의문이 가는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몇가지 말씀드린 것을 일괄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수강료 징수규정 이걸 1년으로 못을 박아 놔던 것을 푼다 그랬어요. 그러면 1년에 몇번씩 이 수강료를 올려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게 상위법규정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답변하실 때, 그런데 없는 것을 왜 구태여 우리 도에서는 이걸 없애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번에는 이 우수학원 지정·육성 문제인데 이상일위원님께서도 아까 열려되는 바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부작용이 생길텐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

로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원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일일이 전부 서류를 보낸 것은 일종의 청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학원수에 비해가지고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이 학원담당 직원이 아주 적어서 학원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소홀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육장을 해봐도 이 학원문제는 이만저만 말씀이 나는 것이 아닌데, 자기네 들끼리 투서도 하고 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전체가 안되면 일부 지역교육청 한 두개라도 표본을 선정해서 이런 자율단체에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이런 것을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안에서 다루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설명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상위법에 이런 것을 조례에 넣어서 안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평생교육담당 임종복입니다.

제가 학원현황이나 그런 것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손만재 위원

네.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우선은 학원난립문제는 지금 현재는 IMF 이후로 학원숫자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도내 전체로 보면 한 50개정도 적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은 개정된 시행령에 분류, 학원의 분류자체가 대폭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는 종전과 똑같이 그냥 두는 것이고 개정된 분류분야라든지, 계열이라든지, 교습과정을 거기에 맞춰서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시설규모는 종전과 똑같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타 시·도 개정조례 관계를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도, 일부 시·도에서는 시설규모를 완화차원에서 축소를 함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수강료 조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수강료 변경문제는 매년 정부에서도 이 학원수강료 문제는 물가안정과 직결이 되어있다 그래서 연초에 수강료는 어느 선에서 인상을 해라 하고 교

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에 물론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학원총연합회에서 자정결의를 해서 작년 수준으로 스스로 동결을 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해서 2년 차에 걸쳐서 동결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교육부로부터 시달이 되면 저희들도 지역교육청에 시달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조례에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정하였을 때는 그 시행일로부터 10일전에 그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강료를 과도하게 이렇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1년에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정부로부터 지시가 되는 그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마지막으로 물으셨으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 같은데 손위원님이 지금 하신 그것.....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그 다음에 우수학원 지정육성문제는 저희들은 우선은 이 조항이 조례에

● 위원장 이충원

그걸 질문하신게 아니지요.

● 손만재 위원

그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것도 있습니까?

● 손만재 위원

네.

● 평생교육담당 임중복

그것은 우선은 조례에 먼저 근거규정이 제정이 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선정서부터 실제로 지정하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런 학원이라면 우수학원으로 지정해서 육성해도 좋다는 그런 판단이 설 때에 지정을 해서 이렇게 육성을 이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손위원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손위원님 그렇죠?

● 손만재 위원

네, 그게 아니구요.

● 위원장 이충원

지금 이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점차적으로 모든 문제를 위임하는 것이고, 소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그 위험성이 많다고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표본적으로 한군데 또는 두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해 볼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 손만재 위원

그렇죠.

● 평생교육담당 임중복

그것은 맨 마지막에 말씀을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이 좀 관심있게 하셔서 저희들의 학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사단법인 한국총연합회에서 정관 제4조 제1항에 보면 사단법인 한국총연합회에서도 제8호에 보면 명시한 법인 목적달성을 위한 본연의 사업으로 조례에 규정하기보다는 학원 건전운동을 위해서 추진하고 자율적으로 정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한국학원총연합회 정관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도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것이 교육부에서도 세부규정 때문에 굉장히 해서 이것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도 타 시·도와 따라서 해봄으로써 이걸 가지고 말씀이 없고, 저희들도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학원에서 저희들한테 엄청난 저거가 왔어요. 이걸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학원총연합회에 권한을 주게 된다고 그럴 때는 굉장히 불리하게 나온다. 그래서 규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례안 심사에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례안 규정은 한국총연합회에서도 그런 것을 본연의, 본연의 임무로써 학원측의 자율연합회에 해가지고 학원의 육성을 뛰어야, 어떤 측한테 권한을 주어서 규제하라는 사항

은 저희들도 그건 바라지 않는다. 그것이 한국학원총연합회 권한입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저희들은 타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학원도. 그런데 그것이 저희뿐이 아니라 타시·도에서 학원연합회에서 이것이 교육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세부규정을 협의해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위원님들한테도 해명자료를 주면서 원활하게 풀리지 않느냐 그것이 핵심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손위원님께 과장으로서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 다음에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지요. 손위원님께서 물으신 거요.

● 손만재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에 상위법에 이 조례안에 이런 걸 규정을 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죠?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네, 그건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 손만재 위원

그 법령에서 이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그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조항을 찾아서 저한테 제시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 - (별첨3)

(끝에 실음)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답변이 다 되신걸로, 손위원님 그러시죠?

● 손만재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마지막으로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이미 위에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해서 전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이 학원설립이 이게 어떻게 신고제예요, 그냥 허가제입니까?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등록제입니다.

● 김광수 위원

본인이 신고를 해서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일정 시설규모만 갖추고 등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가제였었습니다. 그런데

● 김광수 위원

관에 인가를 받아서 그때 시설을 하고 설립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요건을 갖춰놓고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해

준다 이거지요?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네,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떡 쉬워 졌네요. 그러니까 자율권을 준거
네요 이렇게.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네,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리고 지금 자율권 유·무가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학원연합회에서는 이
것을 자율지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게 해달
라고 하는데 또 일부 평회원들은 학원가지
고 있는 분들은 취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분
들이 한 50% 된다 이거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네, 잘되고 있는데

● 김광수 위원

거기다 자율권을 주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규제를 더 받는다.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이중적인 그런 저기가 될 공산이 있습니
다.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그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에 지금 현재 학원연합회에서는 원하고 있
는데 일반 회원들은 50%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거기 가입한 사람은 잘 하고 있는데, 왜
권한을 이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을 저거 하

려고 하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완화를 하고
있는 자세인데,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
.....

● 김광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원연합회에 가입하는 것이 강제
규정이예요, 임의규정이예요?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임의규정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럼 안할 수도 있네요.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은 자료로는
63%로 나와 있습니다. 가입비율이.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
기 때문에 이것은 학원연합회에 가입하면
회비를 내야되고, 연합회에 가입 안할 것
같으면 회비를 안내고 그럴 거예요 아마.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예.

● 김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수강료 수수료가 1년마다
개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1년 이내
에 자유로 맡긴다. 이렇게 하면 그 인상은
학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독
하는 관에서 하는 겁니까, 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원 자체적
으로 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어떠한 학원의 대충 그 요강이 나와 가지고 상위로 얼마까지는 못 올린다하는

● 김광수 위원

그렇지 상·하한선이 있겠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대봉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학원 자체적으로

● 김광수 위원

그 상·하한선이 있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대봉

예.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네가 인상을 해 놓고서, 어디 그럼 우리 교육청에다가 “우리는 인상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합니까, 지역교육청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법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법 15조에 보면 수강료 등 해가지고 “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이런 포괄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는 “수강료 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에 보면 교육감은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수강료조정위원회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1년 이내라도 그 학원경영자들이 수시로 이것을 이렇게 변경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연초에 사실은 저희들이 상한선을 정해 줍니다. 동결이면 동결, 또 5% 범위내면 5% 범위내, 이것이 정부로부터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 결정은 그 시·군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예.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너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예,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같은 학원인데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은 피아노학원이다 이거예요. 피아노학원인데 어디는 6만원을 받고, 어디는 10만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 김광수 위원

그러면 피아노학원이면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지역에서는 똑같아야 됩니다.

● 김광수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그래서 지금 4항에 수강료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 김광수 위원

그 지역에 따라서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이렇게 그것은 똑같아야 된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은 자율적인 요금을 매기기 때문에 학생이라도 수강하는 사람들도 상한선을 정해주면 학생수강생이 안오면 그 학원에서는 더 낮춰서 그런 현실이 또 있어요.

● 김광수 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그 학원에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원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A라는 학원은 10만원을 받고, B라는 학원은 6만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정 선에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회의 때도 이런 수강료

문제가 지역별로 차등이 있고, 또 같은 지역에서도 도시라든지 읍·면지역이나 이런 데에 차등이 있고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 가지고 차라리 교육부에서 고시화하는 것이 쪽이 좋겠다. 다만, 매년 수강료문제는 걱정 물가조사기관도

● 김광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그 말씀만으로도 됐어요.

그리고 여기 우수학원 문제가 여러번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 법 10조에 보면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고서 그 10조가 다시 되었는데, 우수학원의 지정·육성, 교육감은 건전한 학원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학원을 지정·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우수학원으로 지정을 하면 이 학원에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사실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가 그 구체적인 안이 거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안나왔단 말이예요.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지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모든 사항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교육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대로 어떤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그래서

● 김광수 위원

아니,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정하는데

어떠한 문제점보다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학원이 어떠한 유리한 점이 뭐가 있는가, 또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육성은 어떤 방법으로 육성을 해 주는 것인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될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서 그런 조항을 신설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이 현실성과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이런 것이 시행이 될 때에 문제가 없도록 교육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서

● 김광수 위원

규칙으로 만들어서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예,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추천도 받고 저희들이 또 지역교육청에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 때 혹시 착오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 말씀하신 요점을 3,4분 가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님께서서는 수강료책정에 어떤 기간문제 철폐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 내용은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1년 12달 그것 생각만하다 그만둘게 아니냐. 위원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두번째는 자율규제 문제인데 이 법 취지가 가능한 많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그런 그 소위 기풍인데, 이것이 오히려 그쪽에서 자율지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규제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일위원님께서서는 우수학원 지정에 오히려 이것이 관에서 관여하게 된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소지가 있다. 10조인데 관의 간섭, 마치 그 말씀은 안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학교평가가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렇게 이런게 혹시 그런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평가기준이 뭐냐, 이런 것이 대단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상일위원님 그런 말씀이시죠?

● 이상일 위원

예.

● 위원장 이충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자율지도의 문제인데, 역시 과거에 어떤 교육청에서 해본 결과 해볼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을 자꾸 겁내서 하지 말고 이 취지가 자율규제니까 관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대답이 법령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론으로서는 아까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타도에 이미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대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그렇지?

● 이상일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송진하위원님께서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규제완화와 그 법령 문제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간사 송진하

아니죠, 규제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권한 위임이나 위탁은 잘 생각해서 해야한다.

● 위원장 이충원

지금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 손위원님께서서는 네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입법시 교육위원회에 이런 것을 통보해야 될게 아니냐. 그건 모든 위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것인데, 아마 미처 생각을 못하셨던지, 바쁘셔서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이건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 보게되면 신문에 먼저 퍼져서 저희가 아는 경우가 있는데, 좀 난처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해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말씀이셨죠, 손위원님?

● 손만재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법률에 관한 건데, 강제규제완화 쪽으로 개정방향을 지금 자꾸 모든 것을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렇게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수강료정책에 상위법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기수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상당히 상통되는 것 같은데 그러시죠, 손위원님?

● 손만재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 다음에 대단히 제가 느낀바가 있는데, 자율규제를 전체적으로 위임하기 어려우면 표본적으로 한군데쯤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아까 이상일위원님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례규제에 관한 건 제가 여쭙지 않아도 내일 규정을 복사를 해서 손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 다음에 김광수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이것도 굉장히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이 신고제냐, 허가제냐, 등록제냐 하는데 어느 것이냐 그랬더니 등록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허가제가 아니라고 하면 옹당

규제는 자율규제로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허가제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는데, 등록제라고 하면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자율권 부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는 조금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자율규제를 했었을 때에 자기네 어떤 다른 소위 이해관계와 직결되는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혹시 없나 이런 질문이 섞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회원이 되느냐의 말씀도 들었는데 그런 말씀이시지요, 아닌가요?

● 김광수 위원

네.

● 위원장 이충원

그렇게 좀 내포되어 있지요? 자율규제 했을 때 그렇게 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수강료결정권은 자체적으로 이것이 하도록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걸 물으셨는데 대답으로서는 원고 하면 표면적으로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이 자율권을 준 것 같지만 사실은 내막적으로는 이미 어떤 상한선이 결정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대답으로서는 참 조금은 자율규제 하고는 실지는 그렇다하더라도, 그 다음에.....

● 김광수 위원

대단히 그것은 애매한 대답이에요.

● 위원장 이충원

예.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로 우리 물으

신 것이 김위원님께서 우수학원지정의 문제인데 혜택을 얼마정도 주는 것이냐, 경제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말씀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물기는 그렇게 물으셨는데 의미적으로 보면 이것도 대단히 저희가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평가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잘 보여야 뭐 어떻게 되고, 또 뭐 어떻게 되면은 뭐 이런 문제들이 표현을 안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어떤 교육평가에서 등수가 올라가면 교육부에서 그 뭐니까 혜택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적게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자주 떠드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뭐 어떻다 이런 얘기는 안 들도록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미 말씀을 하는 도중에 조금씩 조금씩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할 말씀이

● 이기수 위원

잠깐만

학원수강료 1년 이내에 문제 말입니다. 과장님 대학의 등록금 인상 주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것도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학교의 공납금도 1년 단위로 하지요, 그래서 이 1년이란 얘기는 이게 긴 얘기가 아니고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는데 결국은 과도하게 인상되었을 때 감독한다든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학원이 충북에 청주만 해도 1,7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전체 충북은 몇 개입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희들이 집계한 것은 한 2천개로

● 이기수 위원

청주가 1,700개라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청주가 1,300개입니다.

● 이기수 위원

1,300개, 그러면 충북 전체가 몇개입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한 2,485개 학원으로 나왔습니다.

● 이기수 위원

글쎄, 그렇게 많은 학원을 그렇게 풀었을 때의 문제라든가 이걸 좀 고려해 보시고, 또 아까 위임사항에 대한 문제, 상위법에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단 얘기를 했는데, 그럼 강원도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지정한 것인지,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적인 한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위에 법령 범위 안에서 허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조례제정에 아까 우수학원 규칙을 별도 제정하는 것과 같이 이 감독에 대한 규칙도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공히 다 지적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제가 좀 그 핵심이 되어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예, 짧게 좀 해주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위원님들이 지금 모든 것을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인데 왜 그걸 안풀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규제완화를 하는 증인데 왜 학원자율위원회에서 자기들한테 그런 권한을 달라고 하느냐 이게 문제죠. 조금 풀어도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규제를 자꾸 풀어달라고 자기들도 풀어주는 판인데 자기들은 또 더 왜 그걸 자기들한테 지도권을 달라고 하느냐 그 근본 목적이 틀리다 이거예요.

● 위원장 이충원

그럼 반대로 여기서는 지금 그럼 이 관에서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하지요.

● 위원장 이충원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지도·감독을 한다 그러니까 관의 지도·감독보다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도하겠다 이 얘기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글쎄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그런 자율적 지도위임을 달라고 하는 근본목적이 더 나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타 시·도도 그걸 전부 안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자꾸 규제완화를 풀어주는 판인데, 지금 전체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풀어주

는 판인데 왜 자기들한테 그런 지도위임을 달라고 하느냐 그것은 이중적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규제완화를 풀어 달라고 하는 판인데 더 묶는 거란 말이예요, 이중적으로다. 근본목적이 거기 틀려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네, 알았습니다.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한가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원연합회 시·군에도 분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충주하고 청원, 보은, 옥천, 진천, 음성, 단양 지역에서는 시·군 분회에서 스스로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활동은 미미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여하튼 이런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을 조례 법령에 위임근거도 없는 것을 조례에 정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런 스스로 하고 있는 자율정화위원회 이것 활동을 좀 활성화해서 지금 어느 누구라도 불법운영학원 고발이라든지 이것은 개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학원연합회 측에서도 인지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걸 양성화 시켜서 합법화 시켜줘야 되는게 얘기지, 그럼 그 하고 있는 자체를

법제화 시켜줘서 타당성 있게 해줘야지 어떠한 근거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성을 규제완화에다가 법에 저촉안 되게끔 해줌으로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근거도 없이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 평생교육담당 임종복

자율정화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지금 학원운영에 관한 지도라든지, 점점 또 단속이런게 아니고, 스스로 수강료를 스스로 조정한다든지, 또 건전한 그런 학원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뭐라든지 이런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학원연합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법점점이라든지 이건 아닙니다.

● 이기수 위원

지금 얘기는 학원연합회 안을 그대로 받아 들여 가지고 그걸 그대로 문안에 넣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위법인 법령이라든지 이 범위와 저촉 안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학원연합회에서 안 만든 것을 그대로 거기 문안에 집어 넣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상위법과 저촉 안되는 범위 안에서 하란 얘기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이충원

제가 12시 정각이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 토의를 하셨고 해서 질의도 지금 교육청에 질의요지를 알고 있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것으로

(제104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끝난 뒤에 제가 별도의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청에서 나오신 여러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너무 진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26일 10시 30분에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충원, 간사 송진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이기수, 이상일.

○ 출석공무원 : 3명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 부 록

- ▶ 학원조례개정 설명자료 : (별첨2)
- ▶ 서면답변서 : (별첨3)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年 8월 26일 (목요일) 10시 36분

議事日程 (제104회 임시회 제3차 조례소위원회)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10시 36분 개최)

● 위원장 이충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선포하겠습니다.

편의상 이제부터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소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2안건인데, 안건별로 의결을 하고 심사 보고서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7분)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싶은데, 이의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또 손뎠려고 하면 한참 귀찮고 한데 의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청이 내주

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검토는 초안에 대하여 의안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수정하거나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서안을 설명하시지요.

● 의안담당 연승흠

의안담당 연승흠입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해가지고 심사를 하셨는데 그 동안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종합해가지고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종적인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참고해가지고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앞쪽에 보면 심사경과라든가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은 의안이라든가 아니면 제안설명에서 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맨 뒤쪽에 다섯 번째 심사보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 개정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주로 논의하여 당부드릴 사항은,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일부 시·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 받은 다음 실효성이 있다면 차후 등 조례안의 개정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망하며, 또한 금번 조례개정으로 신설된 '우수학원 지정·육성'에 대하여는 대상학원 선정기준과 방법, 육성방안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동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학원수강료의 1년 이내 변경을 금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학원수강료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등 그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학원수강료 안정에도 보다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작성해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논의된 중에서 원안대로 통과하되 한두 시·군, 한군데를 하시든지 두군데를 하시든지 간에 이 법과 관계없이 규칙 관계없이 자율지도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게 어떨까 이런 권고의 말씀이 있었으면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강제적인게 아니고 권고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쪽쪽 말씀을 하셨는데 별 이의가 없고 해서 내일이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회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10시 43분)

● 위원장 이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너무 사회자가 강권으로다가 하는 지 모르겠는데 의견 들어보지 않고 어제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려고 하

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의결한 본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특별히 논란이 된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검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책임은 오늘 미력하나마 다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 위원님들 더욱 원거리에서 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또 본청의 국장·과장, 그리고 담당관님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5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충원, 간사 송진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이기수,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5명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 홍재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 부 록

-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 : (별첨4)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안) : (별첨5)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1999. 9. .

위원장 이충원 

간사 송진하 

위원 김광수 

위원 손만재 

위원 이기수 

위원 이상일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 일 시 | 부 의 안 건 | 비 고 |
|------------------------------|---|-----|
| 1999. 8. 23 (월) 11:30~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
| 1999. 8. 24 (화) 10:30~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 |
| 1999. 8. 26 (목) 10:30~ |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 폐회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04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99. 8. 24. :

학원조례개정 설명자료

충청북도교육청

1. 학원법령 주요개정내용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99. 1. 18. 개정)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99. 5. 10. 개정)

다. 주요개정내용

○ 학원의 계열 재분류 및 개설가능 교습과정 확대

- 교습과정을 직업·기술, 국제실무, 인문·사회, 경영실무, 예능, 입시·검정, 독서실로 분류하고 유사 교습과정도 설치 등록 허용

○ 한 학원내 1개 교습과정 설치 제한 폐지

- 한 학원의 다양한 교습과정 설치 허용

○ 학원 강사 자격기준 완화

- 대학졸업자의 경우 교습과목 관련학과 전공 제한 폐지

○ 학원 단위 시설기준 완화

- 필수시설인 사무실 및 양호실, 휴게실을 권장시설로 변경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유해업소간 거리제한 완화

- 학원과 다른 건물의 유해업소간 거리 제한 (6m 이내) 폐지

○ 교습소 강의실 면적만(30㎡ 이내)제한 폐지

○ 학습자 사정으로 인한 수강료 반환사유 및 반환 금액기준 설정

- 교습개시일전 전액 반환, 교습개시일 이후 해당월 금액 공제후 반환

2. 학원조례 개정 추진경과

- '99. 1. 18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
(시행일 : '99. 4. 19)
- '99. 5. 10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99. 5. 1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규칙상의 행정규제
정비 추진 지시(교육부)
- '99.5.12.-5.18 학원조례 개정자료 수집(지역교육청 등)
- '99.5.18.-6. 7 학원조례개정안 작성
- '99.6.10-6.29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99. 6. 25 학원조례 개정관련 시·도 협의회(대전광역시교육청)
- '99. 7. 29 법제심의 의뢰

※ '99. 8. 20 현재 타시·도 조례개정 추진상황

- 개정완료 : 강원
- 시·도의회 의안상정 : 서울, 전북
- 시·도교위 의안상정 : 충북
- 시·도교위 의안상정 준비중 : 부산, 대구, 인천,
울산,경기, 제주
- 입법예고 또는 준비중 : 광주, 대전, 충남, 전남,
경북, 경남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 개정사유

-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조례 개정
-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 기타 용어 정비

나. 주요골자

| 구 분 | 주요 개정 내용 | 근거 및 사유 |
|-----------|---|---|
| 상위법개정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원의 시설규모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안 제2조제2항) ○학원 및 교습소의 부제 교습횟수 폐지(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 ○학원과 다른 건물의 유해업소간 거리 제한(6m이내)폐지(안 제6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제7조의2(교습과정의분류등)에서 교습과정의 계열재분류 및 개설가능 교습과정 확대에 따른 명칭의 조정 등 ○영제10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삭제로 폐지 ○영제4조제3항제2호 삭제로 폐지 |
| 규제완화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운영(안 제4조제1항) ⇒05:00~22:00를 05:00~23:00로 함 ○강사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로 완화하고, 해임통보기한을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학원수강료의 1년이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을 폐지(안 제8조제2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규제완화 " " |
| 입법예고 의견수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학원의 지정·육성 조항 신설(안 제10조)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조항 신설(안 제11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원연합회충북도지회의견반영 " |

(별첨 3)

서 면 답 변 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원조례 개정 보충 설명자료

건명 : “학원자율지도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신설 불가 사유

1. 학원관련 법령에서 위탁 근거규정이 없고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 별첨)

- 학원자율지도위원회의 활동중 학원의 계도 및 자율점검, 불법 운영학원(수강료, 교습과정 등) 조사 및 조정·건의, 허위과대 광고 조사 및 조정 등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라기 보다는 학원 지도·감독권의 일부내용으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학원운영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되어 민간위탁하기는 곤란함.
-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교육부 설립허가)정관에서도 학원의 조사·연구 및 무등록학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단속을 건의하는 사항등을 목적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어 (정관 제4조제1항 : 별첨) 실질적인 조사 단속권을 제외한 일반사항을 조례나 규칙에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봄.
- 강원도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타 시·도에 있어서도 법령에 위탁 근거규정이 없고 동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조례나 규칙에 세부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음.

2. 학원자율지도위원회 활동은 이중적 지도·점검의 결과를 초래하여 학원운영자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게 되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 방침에도 어긋남.
3. 충북학원연합회 회원 가입 비율이 60%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비회원 학원들까지 포괄적으로 점검·조사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면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비회원 학원들의 반발과 민원제기가 우려됨. (학원연합회의 비회원 학원들에 대한 회원 가입의 압력 수단으로도 이용될 우려가 큼.)
4. 교육부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학원관계 법령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원장 및 강사연수 권한 위탁 규정과 같이 지도·감독의 일부 권한을 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조항 신설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발췌서

□ 권한의 위임

(개념) 행정관청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하여 타자에게 사무처리 권한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그자의 이름과 권한과 책임으로 특정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권한의 위임이라고 한다.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될 단순행정사무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지도·감독 등) ①교육감은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대한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교육감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감독

②교육감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대한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1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한다.

③교육감은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99년도)

정 관

삼단한 국 학 원 총 연 합 회

12. 전라북도지회 - 전라북도 안에 둔다.
13. 전라남도지회 - 전라남도 안에 둔다.
14. 경상북도지회 - 경상북도 안에 둔다.
15. 경상남도지회 - 경상남도 안에 둔다.
16. 제주도지회 - 제주도 안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원에 관한 각종 자료조사 및 학원교재 연구·편찬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에서 제정한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준수 실천에 관한 사항
3. 원장,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국내외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원 교육환경 정화를 위한 조사, 연구
5. 국가유공자 자녀 및 불우청소년에 대한 무상 강습 실시
6.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
7. 학원수강생에 대한 교육성과 평가의 비교분석에 관한 사항
8. 무등록 학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그 단속을 건의하는 사항
9. 사회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10. 회보발간사업
11. 회원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①항 제12호의 사업은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 법인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

(별첨4)

(제104회 임시회)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1999. 8. 26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8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1999년 8월 23일
- 다. 상정일자 : 1998년 8월 23일(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3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4일)
 -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6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개정사유

급격한 사회변화와 직종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령이 개정('99.1.18. 법률 제5,634호, '99.5.10. 대통령령 제16,294호)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학원 운영의 자율성과 주민의 평생교육 기획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안 제2조제2항 별표 2).
-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토록 하고, 학원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안 제5조).
-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수평거리가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학원의 설립 제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6조).
-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로 완화하고, 해임 통보기한을 5일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학원 수강료의 1년이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은 폐지함(안 제8조제2항).

- 우수학원 지정·육성 조항 신설(안 제10조).
-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조항 신설(안 제11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 개정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주로 논의되어 당부드릴 사항은,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일부 시·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토·분석하여 실효성이 있다면 차후 동 조례안의 개정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망하며,

또한 금번 조례개정으로 신설된 '우수학원 지정·육성'에 대하여는 대상학원 선정 기준과 방법, 육성방안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동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학원수강료의 1년 이내 변경을 금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학원수강료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등 그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학원수강료 안정에도 보다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5)

(제104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1999. 8. 26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8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1999년 8월 23일

다. 상정일자 : 1998년 8월 23일(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3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4일)
-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8월 26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개정사유

현행 교육자치법규중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유사성격 조례인

-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4건의 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로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수수료라함은 “배정수수료, 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안 제2조제1항).
- 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공개정보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1],[별표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안 제4조제1항).
-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안 제5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조례안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자치입법 운용상의 실효성과 관련 조례 난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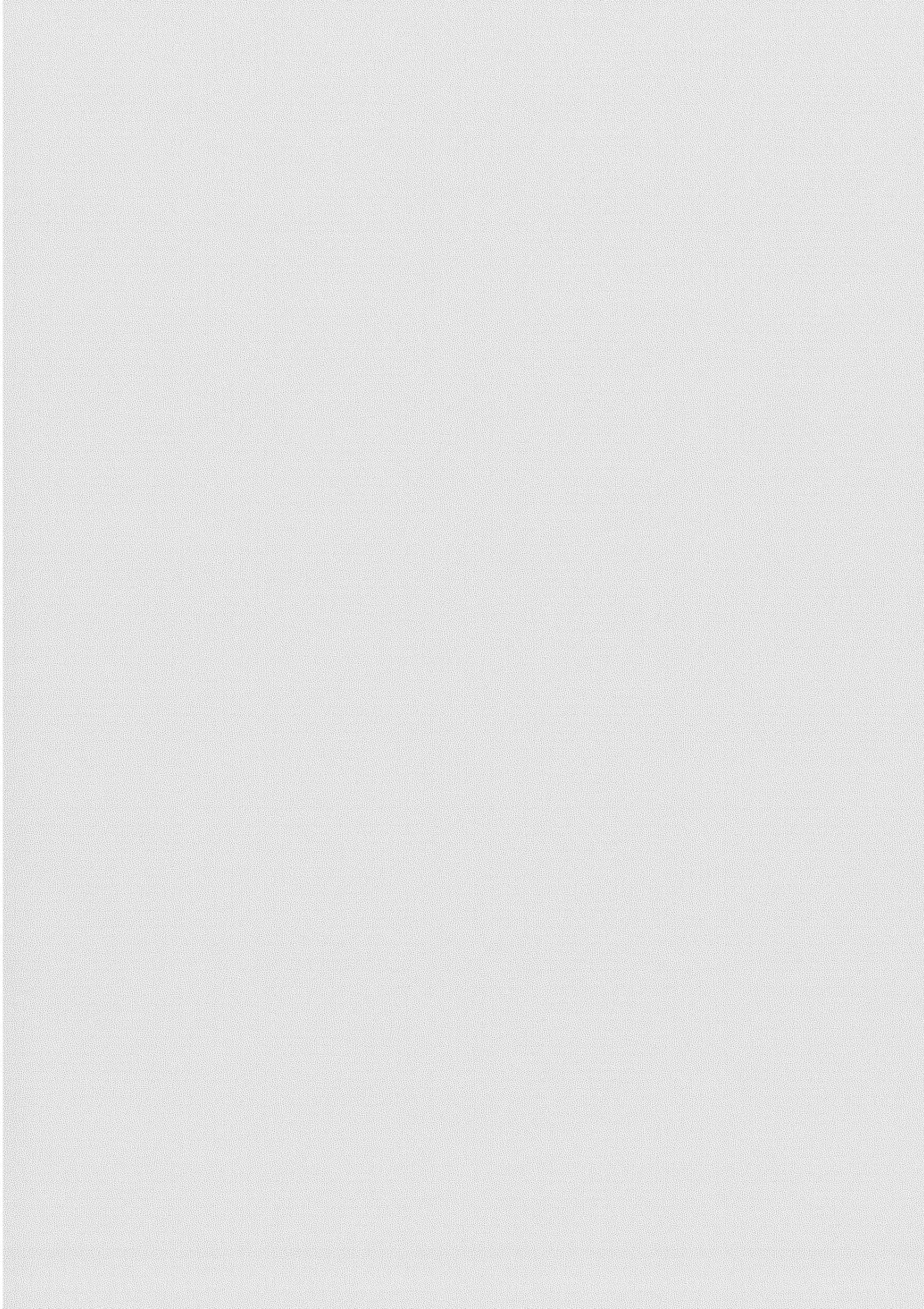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第10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99.8.23 ~ 8.26.)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 |
|---|----|
| I.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3 |
| II.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7 |
| III.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29 |
| IV. 부 록 | |
| 1. 의사일정(안) | 33 |
| 2. 서면답변서 | 35 |
|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안) | 41 |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8월 23일 (월요일) 11시 38분

議事日程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38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승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1시 38분)

● 위원장 직무대행 승진하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선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기수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승진하

이기수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수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교대)

● 위원장 이기수

모든 게 부족한 제가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었는데 예산심의 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41분)

●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이상일위원님

● 위원장 이기수

이상일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일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상일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충실하게 소위원회의 일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42분)

●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과 25일, 26일 3차에 걸쳐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소위원회에서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8월 25일 (수요일) 10시 30분

議事日程 (제10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附議된 案件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이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30분)

● 위원장 이기수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결산안 작성에

직접 참여한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안녕하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입니다.

나뉘드린 자료중에서 '98. 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98. 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본회의 별책1 참조)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 좌석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회의기록을 위해 답변 전에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만재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만재 위원

손만재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서부터 전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준우

예.

● 손만재 위원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볼 것 같으면 분야별 결산검사내용 3을 제외하고는 이런 말이나와 있습니다. 199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사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자산 및 금고의 결산 내역을 지방재정법 등과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분야별 결산검사내용 3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입결산액이 예산액보다 596억 6,800만원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수납액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세출결산액은 예산액대비 92.5%에 해당하는 6,798억 2,800여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세계잉여금이 무려 1,223억원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상고 수업료와 단양교육청의 2개교의 임대료 미수납액 8,20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송진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교육의 간접 경비라고 볼 수 있는 기관의 경비와 운영비를 9억 5,600만원이나 절감한 것은 교단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했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법정전입금의 예산은 8억 7,800만원인데 전입금은 3억 7,400만원으로 전입된 금액으로 자영농과생 기숙사비라든가 농업계자연과 양성교지원비, 그리고 공동도서관 자료구입비 등을 지출했는데 부족한 5억원은 어떻게 충당했는가 하는 것하고 예산전액을 전입받지 못한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명시이월사업비 185억 9,100만원중 계속사업비를 제외한 98억 3,600만원은 2회 추경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기간 부족을 초래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사고이월사업비는 무려 227억 3,100만원인데 그 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중 10건은 사업예산이 확정되었음에도 6개월 이상이나 경과되어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고이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경우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본청에서 '98년도로 명시이월한 원격영상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 1,900만원은 사업자체를 중지하여 전액이 불용처리되어 1년 00 사장되었다고 결산 감사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다섯번째로 보은지역의 수해로 3개교에 3,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수해복구비는 국고나 의연금에서 지원해서 수해복구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교육기관의 수해는 제외되었는가, 만일 제외된다면 교육기관의 세외현금은 자체로 모금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상일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세입에 의존수입이 81.6%입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17.9%인데, 이걸 '97 회계연도와 비교해서 비율이 자체수입이 좀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의존수입이 점점 커져서 의존수입 비율이 높아지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진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을 보면 거의 학교신축이 결국 공기부족으로다가 자꾸 연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절기 오기 전에 공사가 끝나는 어떤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전에 설계를 해가지고 봄에 일찍 시작을 하면 동절기 오기 전에 외장공사만 되면 내부공사는 뭐 추위도 그냥 진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거의 이게 겨울을 나고서 공사가 완성되는게, 그전에도 보면 거의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설계같은 걸 모두 다 끝내놓고, 그 이듬해에 3월이나 4월에 해동되면서 바로 착공을 해서 동절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끝내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면에서 보면 불용액이 571억 8,435만원정도 났습니다. 거기 두번째 급여관리에 약 203억 3,995만 5,410원이 났습니다. 다른 사업비 같은 것은 당초에 예

산을 좀 절감하고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급여관리는 우리 선생님들 교원이나 일반직 숫자 곱하기 봉급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나올텐데 어떻게 해서 여기 200억이 넘는 불용액이 나왔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채무현황에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진천상고의 상용 자금 이미경의 횡령사건 이게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 재판이 끝나면 전액 회수가 가능한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거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다만 한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인데 예비비지출이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IMF 이후에 직업교육을 위해서 8개교에 지출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보니까 다 지출 못하고 유보시켰더군요. 그 내용이 대개 어느 어느 학교에 어떤 걸로 지출이 되었나, 정말로 이것이 예비비로써 지출할 성격인가, 이걸 조금 알기 위해서 좀 문의하고, 또 하나는 보은군에 상고학교, 원남중학교와 종곡, 그렇게 한 학

교의 수해로 인해서 아까 말씀 드렸는데, 제가 중복되는데 죄송합니다. 수해복구비로 지출했어요. 그래 저는 현장을 두 학교를 가봤습니다. 직접, 3,4일전에 가서 돌아봤는데, 원남중학교는 55m인가 그렇죠, 아마? 그런데 그 담을 쌓은 흔적을 제 눈으로서는 보기가 좀 어려워요. 나무로 전부 둘러싸여 있더군요. 그래서 이것이 나무를 심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담장을 55m를 쌓은 것인지, 그걸 제가 좀 여쭙보고 싶고, 종곡은 그 마당 균일을 했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마당을 불도저로 긁어냈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그 옆에 모래가 좀 쌓여 있더군요. 그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이게 왜 다른 비용에서 썼으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별말씀 드리지 않고 있는데 예비비지출이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은 다른 비용과는 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여쭙보는 겁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른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 생략상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지난해 예산은 결국 IMF 구제금융 관계로 예산을 긴축하게 되어서 그랬는지 집행율이 상당히 집행 안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집행율은 사실 예산액분의 결산액, 그러니까 얼마나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했느냐 비율인 것 같습니다. 금

년 예산의 집행율의 공식은 예산액 분의 결산액입니다. 그것이 몇 %이며, 예년 몇 년 동안의 집행을하고는 어떤 차이가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 좀 한번 바로 계산이 될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7.1%인 571억 8,400만원 했는데 거기 내역을 본다면 교육사업비 불용액이 12.8%인 11억 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불용액도 많은데 7.1%라는 얘기는 대단히 많은 비율인데, 유독 이 교육사업비 쪽의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그 쪽의 투자가 좀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저는 100% 불용액으로 봤는데 잘못 본 것입니까? 122억 6,7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냐,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놔야지, 무더기로 사용도 안한 예비비를, 물론 그 예비비 예산에서 몇 %를 예비비로 세워야 한다는 그 예산지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전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봤을 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불납결손액이 발생했는가, 그 내역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불용액은 추경예산안에 전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게 안 했는지. 이거 추경 예산에 했지 않습니까, 어느 항목에 들어가서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집행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한 20분만.

● 위원장 이기수
20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위원장 이기수
답변준비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손만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도의회 결산검사 의견서에 3번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의견서의 2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분야별 결산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말한 겁니다.

● 손만재 위원

알았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준우

그 다음에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크게 네가지로 나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4억 1,994만 1천원이 많은데 그 사유는 교육부로부터 정액교부금 14억 1,994만 1천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것이 '98년 12월 14일에 우리한테 통지가 왔는데 마지막 추경이 2회 추경이 '98년 12월 28일에 확정되고 이걸 도의회에 제출한 건 12월 8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처 예산에 편성할 시기가 실기로 해서 못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남았고. 그 다음에 재산수입이 3억 996만 3천원이 많은데, 이것은 '98년도 재산수입은 최종 추경예산시까지 수입된 금액만 반영되며, 그후에 수입된 금액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금 및 수업료 수납액이 12억 59만 7천원이 많은데 그 사유는 예산편성시 학비감면액 및 결손액을 58억 정도로 우리가 책정했는데 국고지원금이 21억 4,800만원이 되고, 또 외부에서 약 6,000만원이 성금이 지원되어서 실질적으로 약 46억원을 감면했습니다. 그래 그 차액이 12억 정도 남았습니다. 잡수입이 9억 1,093만원이 더 많이 수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유류자금을 고금리 상품인 신중한매체에금등으로 해서 정기예금이자가 우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예산보다 수납액이 많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계잉여금 관계도 이월사업비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총체적으로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잉여금은 크게 이월사업비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나눠지는데 그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계속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가 185억 9,1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227억이고, 계속비이월이 241억,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약 654억이 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이라든가, 예산절감 같은 것, 그것이 569억 554만원으로 그래서 총 1,224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월사업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용인데 결산서에 182페이지부터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8년 12월 26일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승인하신 데다가 본청과 11개 교육청을 합해서 모두 185억이 명시이월사업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한 경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본청과 지역교육청을 합해서 227억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주로 학교

신설이라든가, 시설환경개선사업,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매입 등이 되겠으며,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또는 택지개발이 미준공 되어서 아직 대금을 못 지급한 경우, 이런 것이 전부 합해서 227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공사기간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시설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 중 가장 큰 것이 불용액인데,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그 회계연도 기간내에 집행액을 제외한 그 잔액을 말한 것입니다. 그걸 크게 나누면 그 사유가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 예산절감액, 지급사유 미발생, 순수집행잔액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계획 변경 취소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계획한 사업이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그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말하며, 이 분야에서 불용액이 약 2억 54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외부용역으로 계획된 충주 칠금초 신축공사 감리비와 충주중학교 공사 설계비를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해당교육청에 배치함에 따라서 그걸 용역감리에서 자체감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액이 1억 1,1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또한 가지는 당초에 책임감리 대상사업으로 계획했던 현대화시범학교, 미원초등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50억을 예상했었는데 그건 역시 외부에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후에 사업이 축소되어서 30억 미

만공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체감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에 우리 기술직원이 감리함에 따라서 그 잔액이 한 6,400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본청에 청사경비용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약 1,008만원이 되었고, 또 직원체육대회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감축하고, 이런 것도 합해서 2억 548만원 그래서 이런 것이 계획 변경된 취소된 사유고, 다음에 예산절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교육부지침에 의거 관서운영비,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일반 경상사업비의 10%를 절감한 것으로 모두 53억 6,290만원이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액된 것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이 사후에 상황, 또는 여건으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사고발생시 지급되는 공무상 재해보상금, 또 조리보조원 및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의 퇴직금 이런 것이 있는데 조리보조원하고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의 퇴직금은 종전에는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하고 그 퇴직금으로 한달치를 더 주었습니다. 그것이 관계규정이 바뀌어서 지금은 1년단위로 계속 임용하되 퇴직금은 그 사람이 실제 그만 두는 날, 퇴직한 날 주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순수한 예산집행잔액

으로서 '98년도에는 예년보다 다소 많은 514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는 IMF 체제하에서 세수감수가 예견됨에 따라서 교육부의 지시 또는 자체 계획에 의거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긴급재정을 운영한 결과 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99년도 회계로 이월되어서 '99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상고 수업료 및 임대료 미수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진천상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상용잡급이 수업료를 횡령해서 발생한 사고로다가 그때 그 수납액이 한 7천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판의 진행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달에 1심에서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무과장이던 이상운, 김동호 두 분은 징역 1년씩을 구형 받았고, 그 다음에 장본인인 이미경이란 여직원은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면 상당히 많았습니다. 7천만원 중에서 뭐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의 교장선생님이시던 최성태 국장님께서 600만원을 변상하시고, 또 서무과장이던 김동호씨가 800만원을 변상하고, 또 역시 당시 교장이었던 황계진이라는 교장선생님이 800만원을 변상했고,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발생한 것이 한 800만원, 그래서 한 4,200만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한 2,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상운씨라고 서무과장이 내야될 돈인데, 그 분이 아직 큰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마련

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바로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손만재 위원

예, 됐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시설과장이 설명한다고 그랬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준우

예.

그 다음에 송진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내용은 먼저 원격화상시스템이 이게 아주 사업이 취소된 것이냐, 또 다음에 할 것이냐 이걸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으로 '97년 12월 26일 확정되어서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사실 '9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되고 보니까 그 주요장비가 거의다 외국산입니다. 그리고 외화를 그 당시 참 어려운 체제하에서 외화를 들여서까지 그걸 설치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것이 그렇게 급하지가 않다. 사실 이 사업은 취소시켰습니다.

● 송진하 위원

취소를 시켰다고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준우

네.

그 다음에 인건비 말씀하시죠. 세출예산 중에서 급여관리 불용액이 약 200억이상 남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8년도에 교원·

전문직·일반직중 인건비 예산편성 인원은 14,090여명이고

● 송진하 위원

그건 안 물었는데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준우

그럼 이충원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인데요. 보은지역의 수해복구비의 사용용도 하고 우리 돈이 투입되었나 안되었나 이걸 말씀하셨는데요. '98년도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보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액은 총 3억 8,227만 5천원으로 복구소요액이 11억 212만 4천원인데 복구수해액중 국고지원요구가 2억 3,100만원, 또 재해복구공제회에서 지원요구를 한 것이 8억 3,500만원, 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3,200만원, 또 지역교육청 및 학교자체·복구비로 약 5,800만원으로 국고지원 및 재해복구공제회 지원요구액은 전액 지원받았고, 또 교육특 예비비에서 3,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중 보은 종곡초등학교 담장복구비 700만원, 원남중 담장복구비 1,200만원을 지원해서 모두 복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비 지원기준은 한 개소당 피해액이 400만원이상, 또 복구소요액이 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지원되고, 또 재해복구공제회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복구 대상에 대하여 피해액 정도를 고려 일부 예비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보은 원남중학교 담장은 운동장 담장이 아니고 사택담장을 벽돌로 보수하였으며, 종곡초등학교도 운동장은 자체처리해서 담장만 지원

비로 복구하였습니다.

● 송진하 위원

소요액을 전액 지원받았으면 그걸로 됐지,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은 또 뭐예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준우

그 수해복구 예비비요?

● 송진하 위원

예.

● 이충원 위원

제 말씀은 똑같은데 이렇게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외상으로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고 학교자체

● 학교운영지원과 관재담당 정명환

수해복구비는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이 있고, 재해복구공제회에서 하고, 지방비하고, 자체 4군데에서 지원이 되는데 재해복구공제회에서는 건물만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건물만 보조해 주고, 국고지원해 주는데 국고지원은 일반회계에서 보고가 되어서 일반 도청에서 보고가 되어서 중앙으로 그 상황만 보고가 되는데 저희들 이런걸 400만원이 안되고, 피해액이 4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고가 안된 겁니다. 그리고 복구수해액이 800만원이 되는 것, 이런 것을 도청에서 조사하는데, 도청에서 조사해서 보고가 안된 사항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 송진하 위원

보은의 수해대책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

까. 그럼 보은군내 수해는 전부 총괄해서 집계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했다하면 이게 다 포함되어야지.

● 학교운영지원과 관재담당 정명환

저희들 일선에서 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저희들 하고 군단위 재해대책본부가 있어요. 거기다 보고를 일단 전부 소액까지 전부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사에서 빠진 것만 저희들이 보고 안된 사항만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를 해서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소요액이 적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중앙에서 조그만 금액까지 다 하지 못하고 얼마 미만은 자체에서 해라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액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 복구수해액이 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지원되고, 그 이외에 소규모 피해액은 자체예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담장같은 것은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학교운영지원과 관재담당 정명환

예, 안들어 갑니다. 건물은 저희들이 건물대장에 동기되어 있는 것만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그리고 이상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급여

관리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 사유를 말씀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98년도에 교원·전문직·일반직 인건비 예산 편성 인원이 14,090명인데, 실제 인건비지급 인원은 13,387명으로 205명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고, 이는 인건비 예산편성은 정원으로 하되 실제지급은 현원으로 계산함으로 정원미달운영으로 인하여 인건비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기간제교원이 계약임용에 따른 예산절감, 또 초과근무수당의 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예산절감, 또 공무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차액발생 등으로 인건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 이충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상일위원님 물으신 것이지요?

● 간사 이상일

예.

● 이충원 위원

아까 이것이 작년도에 보면 교사들이 부족해서 수업결손이 생기느니 뭐느니 했는데, 이게 경직성 예산이지요?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네, 그렇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 경직성예산은 다른데 용도가 불가능하지.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인건비에서 다른 데로 돌려쓰지는 못합니

다.

● 이충원 위원

강사료는 지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수당 말고 강사료.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초·중·고등학교에는 강사료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충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경직성비용 월급적 성격 난 것 이거 가지고서 강사료 지출할 수 없는가?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강사료는 원래 별도로 과목이 따로 설정이 됩니다. 원래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편성을 수당과목에 따로 하게 됩니다. 급여에다 하지 않고.

● 간사 이상일

그 기간제교사도 여기서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간제교사는 급여에서 합니다. 그건 강사수당이 아닙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면 왜 작년도에 그렇게 수업결손이 생긴다고 야단들을 했는데, 여기서 좀 지출해서 채용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에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 이충원 위원

일반직 말고. 제가 그럼 거기다 보충하지요.

그러니까 자원이 절대적으로 작년도엔 없

었다. 자격기준 가진 사람이 이래서 이걸 안 지출했나, 그렇기 때문에 수업결손이 생기더라도 그냥 그대로 넘긴 것인가?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아니죠, 수업결손은 아니죠. 그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일반교원에 준해서 줬는데 작년도에는 98만원인가 얼마를 단가를 매겼습니다. 정액을 매겨서 주었고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전에는 임시교사가 기존에 자기 경력에 따른 호봉을 다 찾아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98만원으로다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또 거기서도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됐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절약을 한 것으로도 잘 하셨지만 그 수업결손이나 현장에 적어도 교육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고 여러 번 신문에 났던 것이거든요.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작년에 좀 저기했던 것은 기간제교사 때문에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기간제를 학교형편에 따라서 하되 학교장한테 일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량은 학교장한테 주고 났더니 그것을 무조건 억제하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재지시하고 언론에도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학교장이 판단했을 때 꼭 기간제를 쓸 수 있는 형편이라면 써라라는 그런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선생이 부족해서 수업결손이 되고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분만 대책문제 이런 것으로 기간제를 쓰니 못쓰니 하는 문제는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지시를 해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이상일**

제가 질문한 이 요지는 200억씩 남는 돈이 있었는데 기간제교사를 활용해서 충분히 수업결손이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경직성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게 상반기에 예측이 될 것 아닙니까? 이걸 하반기까지 다 합쳐서 연말총액이니까.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네, 그렇습니다.

● **간사 이상일**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렇게 운영해 봐서 하반기에라도 그런 기간제교사라든지 이런 걸 채용해서 수업결손이 나지 않도록 좀 앞으로 교체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작년엔 문제시되는 수업결손이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현장에 가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불평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답할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산만 있으면 그거 왜 안해 주겠느냐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상일위원 질문하실 때 보니까, 많은 돈이 남았는데 이것이 그것과는 정반대였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작년에 그런 오해가 있어서 다시 추가로 지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준우**

다음에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대비 결산액 현황이 연도별 비교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만들어 보니까. '95년도에는 약 예산액대비 결산액이 90.5%, '96년도에는 88.8%, '97년도에는 같고요. '98년도에는 84.7%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아끼고 운영하는 투자측에서 조금 집행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납결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불납결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불납결손을 사유를 명백히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그 학생이 퇴학했을 때 미납한 수업료 이런 것은 천상 불납결손하는 처리가 되고, 또 임대료 같은 경우에서 아주 극히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보호대상자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상당한 기간 독촉하다가 못받으면 소액입니다만 불납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입니다.

이충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직자재취업 교육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충당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IMF경제난 때문에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6월부터 교육을 실시하라는 정부방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은 이미 5월 1일, 2일에 끝났고, 그래서 5월 초순경에 이걸 계획을 해서 광고 접수해서 6월 1일부터 이렇게 개강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 재원이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어서 예비비에서 이걸 충당했습니다. 또 이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재취업이라는게 저희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하고, 전문대학에서도 하고, 또 학원에서도 하고, 행정부 도에서도 하고 이게 여러 군데서 하게 정부에서 내밀어 가지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재취업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참 서로 골라서 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실업학교에 2,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184명을 예정을 했는데 이게 그런 관계로 재취업 문호가 많이 개방이 되니까 등록은 161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예산이 남았고, 또 남은 이유가 이 수강자들이 자격증을 따면

끝나고 또 수강을 안하고 이러니까 재원이 5,800만원 한 6,0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사용내용은 수강료, 재료비 그 두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제가 추가질문 형식으로 좀 여쭙보는 건데 사실은 물론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인 어떤 윤곽을 생각을 하고 지출을 했어야 하는데 아까 그런, 뭐 여기 뿐 아닙니다. 대학에도 똑같고, 일반에도 별 효과가 없어서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쭙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보통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실습을 마친 뒤에 얼마나 청년들이 취업을 했는가, 무슨 통계가 혹시 나왔으면 그냥 가르쳐 놓고 그냥 그대로 끝내버린 것인가, 그 효과측정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뒤에 소위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 보셨는가?

●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재취업교육으로 끝났고, 자격증취득 하는 것으로 끝났고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자격증은 금광에 터트리는 저기는 3명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했습니다.

● 이충원 위원

3명.

●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네, 전국에서 가서 아주 좋은 효과라고

● 교육정보화과 실업교육담당 김태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교육담당장학관 김태준입니다.

그 실직자관계가 당초 180명이 되어 있었는데 등록해서 161명의 중도탈락자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98명이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98명에 대한 자격증취득 현황이라든지, 또는 취업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시점에서 충분히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께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 - (별첨2)

(끝에 실음)

● 이충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당시 신문에 보면 '실업대책교육비는 보는 놈이 먹는 것이다' 저희 학교의 보통교육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 지금 미지출 된 것이 많다 적다하기 이전에 적어도 얼마만큼 효과를 거뒀는가. 사후에 한번 우리가 평가해 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과연 효과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날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이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긴급한 상황이 예비비를 지출할 정도로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 그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개 그렇거든요. 중앙에서 지시에 의해서 해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

산집행은 또는 예산분할은 조금은 제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거기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도교육청은 예비비에서 없는 예산을 짜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반 노동부계통이나 또는 대학이나 학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것보다 대개 실업고등학교 선생님들을 강사로 고용하고, 또 그 시설을 주로 이용해서 썼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아주 적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수당 같은 경우도 보충수업수당에 준해서 주고, 일반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한 2만 4,5천원 정도를 1시간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1만 3,4천원 이렇게 밖에 못주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껴서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관계도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답변이 남았습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그 다음에 송진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정전입금 8억원중 부족한 5억원은 어떻게 충당하였는가. 이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은농·공고에 재원이 농특세에 의한 학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6억 8,000만원이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는데 세수부족으로 5억이 덜 왔습니다. 1억 8,000

만원으로, 그래서 이것이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이 5억원이 충당을 못했었는데 다시 '99년도에 자체적으로 하고서 '99년도에 5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충당이 되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면 그 세가지 사업을 3억 7,400만원 가지고 모자랐을 것 아니에요?

●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6억 8,000만원이 다 왔습니다.

● 송진하 위원

다 왔다고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그 돈이 작년에 온 것이 아니고 금년에 왔습니다.

● 송진하 위원

금년에 왔다고요.

그러면 한 것은 '98년도에 했는데 뭘로 했어요, 그 당시에?

●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그건 자체적으로

● 송진하 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학교 자체적으로. 그 후에 지원을 해줬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수부족으로 받을 수가 없다.

●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네, 세수부족으로 농특세가 안들어 와서

● 송진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 수입은 3억 7,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8억 7,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5억을 더 세운 것이지.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아니죠, 거기서 돈을 준다고 교부통지가 왔었어요. 와서 세운 것인데 그 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5억이 덜 온 거죠.

● 송진하 위원

알았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이기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 과다책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6월 10일자 전국시·도교육감 회의에서 IMF 때문에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한 20% 감축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지난해 9월 4일 전국시·도관리국장 회의에서 역시 지방재정이 한 8,000억 감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축해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7월 23일에 305억원을 재조정해서 예산을 짰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이걸 그러니까 IMF 때문에 세수가 감소된다, 또는 8,000억 지방재정이 감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감축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재정운영상 불가피한 조치를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2월에 569억원 예산책정 내용은 별지로 드렸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190여억원, 고등학교 급식시설에 20여억원, 수용 및 일반시설에 123여억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더하고, 그

건 별지로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과장 오형균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송진하위원님께서 예산에 편성된지 6개월 지나서 사고이월시킨 공사가 10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상일위원님께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동절기기간을 거치지 않고서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시설공사 세출예산 확정 후 저희들이 조사·감독 공사발주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설계 및 입찰기간이 과다 소요로 인해서 본 공사인 건축공사가 지연 발주된 사업으로 신설학교 신축공사인 경덕초등학교 그것이 3개교가 있었고, 농촌현대화시범학교의 시설 미원초 등 전부다 한 10개 공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설계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15개월 내지 18개월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당해연도에 끝나질 못하고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계약이 되었으면 사고이월이 되는데, 더군다나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대개 전년도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국고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이 편성되면 그 해에 설계만 하고, 그 다음에 시설사업비는 명시이월 해서 그 다음해에 발주를 해서 다시 18개월 걸려서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9월에 개

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공사는 당해연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조기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이 교육계가 동계 공사가 많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동계 공사로 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동계 공사가 안되도록 앞으로는 업무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물론 설계기간과 공사기간이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동계 기간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묘지, 해마다 아마 교육계는 해마다 그런 것 같아요. 동계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예산확정이 언제 된 것이고, 공사설계를 얼마나 한 것이고, 공사기간이 얼마이기 때문에 동계 공사가 되었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셔야지 막연히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 기획관리국장 조신형

그건 총괄적으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짜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하여간 감사라는 감사 때마다도 지적을 받고, 또 답변은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노력

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사실은 안됩니다. 그것이 저희들 독자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교육환경 개선비 같은 경우는 교육부로부터 예산교부가 될 때에 전년도에 예산교부를 해주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준다면 아까 우리 시설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설계기간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반이 지납니다. 예산편성 지나고 확정되고 나서 1월에 바로 설계발주를 한다하더라도 큰공사 신설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는 6개월 정도 지나면 반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간에 또 설계받고 검수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입찰 붙이는 기간이 한 두달정도 혹 지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착공이전의 기간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신설학교나 이런 경우는 어차피 당해년도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신설학교가 내년 후년에 신설학교 있다 그러면 겨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 1년전의 토지매입비까지 설계비도 안주고 토지매입비가 1년지나서 겨우 시달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더군다나 설계비 자체도 당해년도에 예산을 줌으로써 그 공사가 늦어지는 이러한 그 관계가 즉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정된 것이 한 6,7년전부터는 설계비가 꼭 그 전년도에 시달이 되도록 되어서 그것만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공사입찰하는 기간 이

런 동등으로 해서 당해년도에는 어차피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되고, 또 그 외에 조그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것이 당해년도에 끝날 수는 있는 사업이 됩니다. 공사기간이 간단하게 끝나는 것은, 그러나 이런 조그만 사업은 거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가 거의 그냥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5,6월에 예산확정이 되어서 조그만 공사를 집행하게 되면 그것도 설계기간 이런 동등하다보면 동절기가 딱 당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조금만 공사 같은 것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깁니다. 그 이월금이 불확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결정이 된 다음에 공사추진을 하게 되니까 예산 반영한 뒤에 공사추진을 하게 되니까 그 동절기 공사가 맞아지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면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안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공사별로 필요한 자료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은 언제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설계는 언제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동절기가 맞아지고 사고이월이 된다 이런 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시간을 주신다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자료는 됐습니다. 다만, 동계공사가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명시이월 된 98억여원은 2회 추경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 했는데, 2회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 추경을 늦게 해줬다 그런 애긴가요, 2번했다는 애긴가요?

● 시설과장 오형균

추경이 통상적으로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1회 추경, 2회 추경 있고 2회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 시설과장 오형균

하반기 추경에

● 송진하 위원

그럼 전반기 추경에 올리지, 왜 후반기에 올려요.

● 시설과장 오형균

그런데 그것이 거의가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국고사업입니다. 국고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교육부에서 교부가 늦어지는 바람에 1회에 반영이 안되고,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송진하 위원

동계 공사는 가급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뭐 예산배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안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사실 저희들 집행청에서도 봐도 지금 몇

년전에 진, 예를 들어서 청주여고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 슬라브를 이렇게 했을 때 그 유리창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라브가 시원찮아서 그랬는지 거기다 이렇게 좀 발라서 각지게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게 동계공사를 해서 그런지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4층, 5층에서 그게 조각이 떨어지면 애들이 만약에 다치면 큰 위험사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현장까지도 목격을 해서 이것은 절대 안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결기 공사는 최대한 억제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원격영상시스템은 취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게 '97년부터 하려던 것 아닙니까. '97년에도 하려다가 이월하고, '98년에도 하려다가 취소하고,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10억이라는 돈을 97년부터 지금까지 사장 시킨거란 말이예요. 예산활용이 안된 거지요.

● 기획관리과 김진성

초등교육과에서 답변 올려야 되는데 제가 잠깐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자구노력비, 평가에 자구노력비가 좀 전국에 2위를 하는 바람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타도보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사업을 해보자 해서 원격영상시스템을 하면 회의 같은 것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역교육청에서 출장도 안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세웠던 것인데, 마침 IMF가 터지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아주 긴박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일종의 다 말하자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죽인 거지요. 그래서 안한 겁니다. 그게 달리 안한 것이 아니고, 그건 2번 이월한 것이 아니라 1번 책정했다 그해에 사업을 안하고 말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걸 안한 것입니다.

● 송진하 위원

현재도 그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냥 그대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공유재산에 편성이 되어서 탄 쪽으로 쓰인 것이지요.

● 송진하 위원

그걸 취소할 때는 신속히 취소해서 그 돈이 빨리 이용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사장되었단 말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 해에 세입예산이 여러가지 각도에서 많이 정부에서부터 들어올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서 쓸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 그대로 나뉘야 될 처지이기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98년도 예산에서는 사업의 20% 정도를 유보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거의 아까 예비비에 과다책정 되었다는 그런 지적하신 내용도 그런 돈을 추경이 있을 때에는 예비비에 넣어 뒀었고, 그렇지 않고서 남은 돈은

그냥 불용액으로 해서 이월금으로 넘어가서 '99년도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 위원장 이기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손만재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만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부분 이해가 갑니다만 아직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서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대형공사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짓는 다든가, 강당을 짓는 다든가 하는 것은 이 공사가 이월되는 것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까만 자그마한 공사들 이것이 우리가 2회 추경이 확정된 때가 시방 꽤 오래 되었는데 아직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이 발주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본청에서 3,4억 자리 2,3억자리 추경에서 확정이 되었으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사를 이미.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네, 있습니다. 그 건수는

● 시설과장 오형균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2회 추경

● 손만재 위원

네, 알아주세요.

있다고 하면 제가 왜 금년도 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하면 또 내년도에 이 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길까봐서 지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일단 확정이 되었으면 그 해에 써야지 왜 자꾸 이월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래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말씀, 국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시설과 직원가지고 이 설계가 안될 때에는 물론 용역을 주고 있겠죠?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네, 그렇습니다.

● 손만재 위원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용역의 계획부터 시설과에서 세워 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설계가 안되는 특수설계다 하면 진작에 발주가 되었어야죠. 왜 그걸 추진을 그렇게 안해 가지고서 뒤늦게 해서 내년도에 또 이월 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과에 시설설계담당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뭔가 인원배치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예요. 또 배치를 제대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안된다고 하면 뭔가 추진을 안한게 아니냐 이런 얘입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가지고 작은 공사들은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이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이기수

시간관계로 지금 동계공사 문제는 우리가 2대 교육위원님들이 행정감사나 이런 때에 항상 논의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 그때 얘기 들으면 또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또 지나면 지금 타당한 이유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다 동계공사에 대한 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2대나 3대나 다 마찬가지로 있는 얘기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시설과에서 교육부예산 확정하고 그 내용을 타임시리즈로 쭉욱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표로 만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다든지 하면 이 교육부에서 예산 주는 것을 늦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들어갈 수 있게 하지 말고 당초에 줄 수 있게 건의나 회의를 한 다든지 또는 설계가 6개월 된다든지 하면 이 학교가 비슷비슷한 데가 교실 20칸 짜리다 이렇게 된다면 아주 표준설계를 적용해서 설계기간 6개월만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법적으로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해서, 그리고 또 동계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얼 수 있는 조건은 다 갖고서 적당하게 공사를 추진하지 말고 과감하게 부시고서 봄에 공사를 시작한다든지, 이왕 늦은 것 이런 몇가지 방안들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한부씩 돌려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 손만재 위원

그래서 이 결산하고 100% 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때 그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위원장님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동계공사에 대해서 100% 저희들이 수공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실은 제가 그걸 방지하자고 과장님들 회의있을 때 일 부러 몇번 금년 2회 추경 되자마자 그걸 챙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충주농고의 온실공사 같은 경우는 바로 발주하려고 봤더니 학교에서 기본계획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온실을 지음으로 해서 전기용량이 늘어나는데 그 전기용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승압공사를 해야 됩니다. 승압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한 1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걸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그게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계의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집행청에서는 온실만 지어주면 뭐하냐 있는 집행잔액을 모아서라도 승압공사를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스가 조금 예상치 않은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지금 국장님 우리가 어떤 특수한 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동계공사를 방지하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시고, 또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올 수밖에 없던 이유를 상세히 교육부에서 예산 받는 것, 그 다음 설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선을 만들어서 저희 교육

위원들한테 한부씩 나눠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 - (별첨2)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기수

그럼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의 회의는 무사히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제3차 소위원회에서 본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0명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 홍재문,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 본회의 별책부록 5 참조
- ▶ 서면답변서 : (별첨2)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8월 26일 (목요일) 10시 46분

議事日程 (제104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附議된 案件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46분 개회)

● 위원장 이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어제 제2차 소위원회에서 '98년도 결산 전반에 대한 세부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을 한 다음,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47분)

● 위원장 이기수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

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께서는 심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담당 연승흠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쪽에 심사경과라든가 제안설명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그리고 세번째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도 위원님들께서 미리 유인물을 통해서 다 접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의 주요내용에 있어서 첫번째 세입·세출결산 총액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셨던 맨 뒤쪽에 그러니까 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종합의견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어저께 심사를 하시면서 주로 논의된 사항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집행청에 꼭 당부말씀을 드려야할 사항이라든가 개선점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한번이 종합의견란으로서 작성을 해 봤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세출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규정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집행지침 등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며, 기관의 경비와 운영비를 절감하여 IMF 상황하에서 긴급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으로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시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시행을 추진하여 연도말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 교육시설이 부실하게 시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사업이 유보 또는 취소될 경우 시급한 교육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합의견을 작성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작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심사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볼까 싶은데요. 다섯쪽에 보면은 '98년도말 현재 액이라고 그래서 물품이 나와있어요. 그 수량이 9,839점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그 '98년도말 현재 9,839점에 이게 449억인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입니다.

물품현황은요, 주요 물품인데 주로 2백만원 이상 물품만 포함된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2백만원 이상 물품만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 김광수 위원

그것인 도 본청에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교육부 물품관리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본청하고 11개 교육청을 다 합한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11개 교육청에 다, 이게 학교에 있는 것까지 다 합한 거예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그렇죠.

● 김광수 위원

이 9,839점 밖에 안되는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2백만원 이상만 지금 한 것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학교에 큰 물품이 고가 나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 소관된 물품 점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충청북도 내에 전부 있는 점수인지 이게 좀

그리고 행정재산이 총액이 이게 얼마가 돼요? 행정재산 그 학교 건물, 부지 이런 거 전부해서 이게 나온 거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네, 맞습니다.

● 김광수 위원

전부가 이게 얼마예요? 1조 5천 335만원 이게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네, 맞습니다.

● 김광수 위원

물품대 같은 것은 다 합해서 그렇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물품은 빠져나간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물품은 빠지고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물품은 아까 말씀하신 것 포함되어 있고요, 이 토지하고 건물만 포함된 겁니다.

● 김광수 위원

토지, 건물만 해서 이게 이래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예.

● 김광수 위원

상황이 어떤건가 싶어서 좀 여쭙봤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초안대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 심사에 적극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청 관계 공무원에게도 본 결산안이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되기까지 성심껏 준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청에서는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잘 검토해서 금년도 예산을 모순됨이 없이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

(제104회-제3차 예·결산소위원회)

리며,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침과 아울러 제3차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54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5명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공보감사담당관 홍재문.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안) : (별첨3)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1999. 9. .

위원장 이 기 수 

간 사 이 상 일 

위 원 김 광 수 

위 원 손 만 재 

위 원 송 진 하 

위 원 이 충 원 

(별첨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 일 시 | 부 의 안 건 | 비 고 |
|------------------------------|--|-----|
| 1999. 8. 23 (월) 11:50~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최]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
| 1999. 8. 25 (수) 10:30~ |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최]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 |
| 1999. 8. 26 (목) 11:30~ |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최]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 |

(첨 2)

서 면 답 변 서

충청북도교육청

'98 산업체 재취업교육 실시현황

■수료현황

| 학교명 | 프로그램명 | 당초교육인원 | 중도탈락인원 | 수료인원 | 비 고 |
|------|---------|--------|--------|------|-----|
| 청주농고 | 제빵 | 30 | 14 | 16 | |
| 재천농고 | " | 14 | . | 14 | |
| 충북공고 | CAD/CAM | 18 | 8 | 10 | |
| 광산공고 | 시추 | 24 | 8 | 16 | |
| 충북상고 | 사무자동화 | 38 | 19 | 19 | |
| 영동상고 | " | 37 | 14 | 23 | |
| 계 | | 161 | 63 | 98 | |

■기능사자격 취득 및 취업현황

| 학교명 | 수료인원 | 자격취득자수 | 취업자수 | 비 고 |
|------|------|--------|------|-----|
| 청주농고 | 16 | 12 | 4 | |
| 재천농고 | 14 | 7 | | |
| 충북공고 | 10 | 7 | | |
| 광산공고 | 16 | 16 | 8 | |
| 충북상고 | 19 | 13 | 8 | |
| 영동상고 | 23 | 15 | | |
| 계 | 98 | 70 | 20 | |

■중도탈락현황

| 학교명 | 탈락자 | 탈락사유 | | | 비 고 |
|------|-----|------|------|----|-----|
| | | 취업 | 가정사정 | 기타 | |
| 청주농고 | 14 | 11 | 3 | | |
| 충북공고 | 8 | 8 | | | |
| 광산공고 | 8 | | 8 | | |
| 충북상고 | 19 | 12 | 4 | 3 | |
| 영동상고 | 14 | 10 | 4 | | |
| 계 | 63 | 41 | 19 | 3 | |

'98 사 고이월비 사업별 이월사유(신설교 및 받주지연사업)

(단위:천원)

| 기 관 별 | 사 업 명 | 이 월 액 | 이 월 사 유 (공사추진과정) |
|-------|-----------------|---------|---|
| 본 청 | ○ 충주상고 특별교실증축공사 | 140,7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12.26. 제2회 추경으로 예산확정(병사이월) - '98. 3. 7. 시설사업 보조예정통지 - '98. 7.23. 보조금신청 지연사유 제출(충주상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예정통지후 본관 옥상에 증축하기로 설계중에 법원에서 생활관 신축과 병행추진하기로 결정되어 설계중단 · 특별교실을 별도로 증축하여 2층을 생활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설계계추진(설계기간 : '98. 7.23.~'98. 8.25) - '98. 8.29. 건축허가 신청 및 시실결정면적 부족으로 동일자 반려 - '98. 8.29. 시설사업비 보조신청(1차) - '98. 9. 9. 설계내역 미비로 보조신청서 반려(보완지시) - '98. 9.22. 시설사업비 보조신청(2차) - '98. 9.23. 시설사업비 보조결정 - '98.10.14. 차공지연사유 제출(충주상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부담금 충당문제로 지연 · '91년 학원이진당시 시실결정면적의 분할, 합병, 매각 등에 따른 건축물관리 대장 등재소홀로 건축허가 지연(구적처리기간 : '98. 8.29.~'98.10.17) - '98.10.17. 건축허가 신청 - '98.10.24. 건축허가 - '98.11.17. 차공보고(준공예정일 : '99. 3.17) - '98.12.30. 동결기 공사중지(해제 : '99. 3. 1) - '99. 8.24. 준공 |

| 기관별 | 사업명 | 이월액 | 이월사유 (공시추진과정) |
|-------|---------------------|-----------|---|
| 청주교육청 | ○ 경덕초 교사신축공사 | 2,401,462 | - '97.10. 1. 설계용역 집행품의 |
| | ○ 남평초 교사신축공사 | 3,379,486 | - '97.11.14. 설계용역 계약체결 |
| | ○ 죽천초 교사신축공사 | 3,814,299 | - '97.12.16. 예산확정('98당초예산) |
| | | | |
| | ○ 청주중 급식소 및 승강기시설공사 | 83,795 | - '97.12.26. 제2회 추경으로 예산확정(명시이월) - '98. 2.12. 급식학교 지정 - '98. 2.16. 시설사업 설계협의(예산부족으로 추가예산 요구) - '98. 5. 2. 제1회 추경에 추가예산 확보 - '98. 5.27. 설계용역 계약체결 - '98. 7.31. 설계도서 납품 - '98. 8. 7. 공사 집행품의 - '98. 8.22. 계약체결 - '98. 8.25. 공사착공(준공예정일 : '99. 4.15) - '98.12.11. 동결기 공사중지(해제 : '99. 3. 5) - '99. 5. 1. 준공 |

| 기관별 | 사업명 | 이원액 | 이원사유 (공사추진과정) |
|-------|----------------|-----------|--|
| 충주교육청 | ○ 용신초 교사신축공사 | 2,758,77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10. 2. 설계용역 집행품의 - '97.11.20. 설계용역 계약체결 - '97.12.16. 예산확정('98당초예산) - '98. 3.23. 설계도서 납품 - '98. 4. 6. 공사 집행품의 - '98. 5.28. 공사입찰 - '98. 6.18. 계약체결 - '98. 6.22. 공사착공(준공예정일 : '99. 5.24) - '98.12. 7. 동절기 공사중지(해제 : '99. 3. 8) - '99. 8.20. 준공 |
| 제천교육청 | ○ 홍광초 유치원사신축공사 | 378,2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12.26. 제2회 추경으로 예산확정(명사이월) - '98. 1. 6. 설계용역 집행품의(두사업 통합발주) - '98. 1.26. 설계용역 계약체결(납품 : '98. 5.25) - '98. 6. 1. 공사 집행품의 - '98. 6.13. 공사입찰 - '98. 6.16. 계약체결 - '98. 6.18. 공사착공(준공예정일 : '98.12. 4) - '98.11.25. 동절기 공사중지(해제 : '99. 3.11) - '99. 3.24. 준공 |
| | ○ 홍광초 다목적실신축공사 | 181,333 | |

| 기 관 별 | 사 업 명 | 이 월 액 | 이 월 사 유 (공사추진과정) |
|-------|-------------------|------------|---|
| 청원교육청 | ○ 미원초 동춘현대화시범학교시설 | 1,923,35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 9.13. 예산성립이전 사용결정 - '97. 9.24. 개축교실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97.12. 8. 계획실계 용역계약(납품 : '98. 2. 7) - '97.12.26. 제2회 추경으로 예산확정(명시이월) - '98. 3. 5. 실시실계 용역계약(납품 : '98. 6.16) - '98. 6.27. 공사 입찰공고 - '98. 8. 4. 계약체결 - '98. 8.10. 공사착공(준공예정일 : '99. 8. 4) - '98.12.20. 동절기 공사중지(혜제 : '99. 3. 1) - '99.10.14. 준공예정 |
| 진천교육청 | ○ 한천초외 1교 담장시설공사 | 34,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12.26. 제2회 추경으로 예산확정(명시이월) - 도시계획도로로 군청의 도로공사가 계획되어 있어 도로공사 준공후 발주계획 - '98.12. 8. 공사 집행품의 - '98.12.15. 계약체결 - '98.12.18. 공사착공 - '98.12.18. 공사중지(도로공사로 공사중지 : '99. 5월 준공예정) - '99. 5.26. 공사 재착공 - '99. 7. 8. 준공 <p>※ 담장시설 위치가 군청의 도로공사와 연계되어 담장계부분의 도로공사가 끝난후('99.5월준공)에 시공되어야 하므로 발주지연</p> |
| 합계 | (10건) | 15,095,683 | |

(별첨 3)

(제104회 임시회)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심 사 보 고 서 (안)

1999. 8. 2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목 차

| | |
|-------------------------------|----|
| 1. 심사경과 | 43 |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 43 |
|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 | 43 |
|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44 |
| 5. 토론 주요내용 | 44 |
| 6. 심사보고 주요내용 | 44 |
| 7. 심사결과 | 48 |
|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48 |
| 9. 기타 필요한 사항 | 48 |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심 사 보 고 서 (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8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1999년 8월 23일
- 다. 상정일자 : 1999년 8월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소위원회(1999년 8월 23일)
 - 제2차 소위원회(1999년 8월 25일)
 - 제3차 소위원회(1999년 8월 26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98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중 세입결산액은 802,204,004천원, 세출결산액은 679,826,075천원이며,
- 이월사업비는 65,461,237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6,905,544천원, 국고보조금잔액 11,148천원으로써 총 122,377,929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회 결산검사 의견

: [결산검사 의견서]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5.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예산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세계잉여금 |
|-------------|-------------|-------------|-------------|-------------|
| 742,536,572 | 802,471,662 | 802,204,004 | 679,826,075 | 122,377,929 |

○'98.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802,471,662천원('97.이월사업비 59,935,090천원포함)이며,

○세입결산액은 802,204,004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9%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679,826,07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4.7%를 집행하였고,

○세계잉여금이 122,377,929천원이 발생되어 이중 65,461,237천원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 충당되고 11,148천원은 국고보조금 잔액이며 나머지 56,905,544천원은 다음년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음.

- 명시이월사업비 : 18,591,687천원

- 사고이월사업비 : 22,730,809천원

- 계속비이월 : 24,138,741천원

- 순세계잉여금 : 56,905,544천원

- 국고보조금 잔액 : 11,148천원

나. 세입결산

(단위 : 천원)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 |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
|-------------|-------------|-------------|--------|--------|-------------|--------------|
| 802,471,662 | 802,315,671 | 802,204,004 | 29,695 | 81,972 | 99.9% | 99.9% |

○'98.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총 802,315,67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802,204,004천원이 수납되고 29,695천원의 불납결손과 81,972천원이 미수납 처리됨으로써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의존수입 658,701,777천원(82.1%)
 - 자체수입 143,502,227천원(17.9%)으로,
-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는 약간 상향된 것으로 나타남.

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집행율 | 불용율 |
|-------------|------------|-------------|-------------|-------------|------------|-------|------|
| 742,536,572 | 59,935,090 | 802,471,662 | 679,826,075 | 65,461,237 | 57,184,350 | 92.9% | 7.1% |

'98.세출결산은 지출액이 679,826,07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4.7% 집행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5,461,237천원으로 예산현액의 8.2%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57,184,350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1%인데,

○지출액 679,826,075천원의 내용을 관별로 살펴보면,

- 교육위원회비 644,402천원(0.1%)
- 급여관리 435,987,586천원(64.1%)
- 교육행정비 16,104,835천원(2.4%)
- 교육사업비 7,307,456천원(1.1%)
- 학교비 66,419,256천원(9.8%)
- 사학지원비 45,455,894천원(6.7%)
- 시설비 107,906,646천원(15.8%)

전년도 대비 관별 점유율은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임.

○다음년도 이월액 65,461,237천원의 관별 내용은,

- 교육행정비 110,477천원(0.2%)
- 교육사업비 464,026천원(0.7%)
- 학교비 4,991,198천원(7.6%)
- 사학지원비 4,070,869천원(6.2%)
- 시설비 55,824,667천원(85.3%)으로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공사임.

○불용액 57,184,350천원의 관별 내용은,

- 교육위원회비 61,315천원(0.1%)
- 급여관리 20,339,955천원(35.5%)
- 교육행정비 1,438,191천원(2.5%)

- 교육사업비 1,148,217천원(2.0%)
- 학 교 비 5,011,815천원(8.8%)
- 사학지원비 1,926,436천원(3.4%)
- 시 설 비 14,991,260천원(26.2%)
- 제지출경비 3천원(0.0%)
- 예 비 비 12,267,158천원(21.5%)으로써

예산현액에 대한 총불용비율이 7.1%로 '96년도에 4.6%, 전년도 5.6%에 비해 다소 높아 졌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급여관리(인건비), 학교비, 시설비, 예비비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관별 점유율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급여관리 및 교육행정비가 1.3%, 교육사업비는 0.2%, 시설비는 1.6% 증가한 반면 학교비는 1.9%, 사학지원비는 1.1%, 예비비는 0.1% 감소하였음.

라. 이월비 결산

(단위 : 천원)

| 명 시 이 월 | | 사 고 이 월 | | 계 속 비 이 월 | | 계 | | 비 고 |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 37 | 18,591,687 | 32 | 22,730,809 | 1 | 24,138,741 | 70 | 65,461,237 | |

'98.이월비는 명시이월 37건에 18,591,687천원, 사고이월 32건에 22,730,809천원, 계속 비이월 1건에 24,138,741천원, 총 70건에 65,461,237천원으로, 그 기관별 내용은,

- 분 청 23건 39,868,292천원(60.9%)
- 지역교육청 47건 25,592,945천원(39.1%)임.

마. 예비비 결산

(단위 : 천원)

| 사 업 명 | 지출결정일 | 예 비 비 지출결정액 | 예 비 비 지 출 액 | 잔 액 | 비 고 |
|------------|-----------|-------------|-------------|--------|-----|
| 직업교육확충 | '98. 7. 9 | 120,000 | 61,576 | 58,424 | |
| 수해복구 지원비 | '98. 8.24 | 32,000 | 31,953 | 47 | |
|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 | '98. 8.26 | 188,152 | 188,152 | 0 | |
| 사망조의금 | '98.10. 7 | 446,485 | 446,485 | 0 | |
|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 '98.10. 7 | 51,833 | 51,833 | 0 | |
| 손해배상금 | '98.10.13 | 26,635 | 26,635 | 0 | |
| 합 계 | | 865,105 | 806,634 | 58,471 | |

위 6건의 예비비 지출은 금회 제104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1998년도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임.

바.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채 권

(단위 : 천원)

| 종 류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중 발생액 | 당해연도중 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비 고 |
|-----|-------------|--------------|--------------|--------------|---------|
| 대지료 | 0 | 4,121 | 0 | 4,121 | 대부료 미납 |
| 대가료 | 0 | 4,989 | 0 | 4,989 | 대부료 미납 |
| 수업료 | 0 | 70,330 | 0 | 70,330 | 세입금 횡령 |
| 잡수입 | 0 | 2,532 | 0 | 2,532 | 대부료 연체료 |
| 계 | 0 | 81,972 | 0 | 81,972 | |

○채 무 : 해당사항 없음.

사. 재산의 결산

○공유재산

(단위 : 천원)

| 구분 재산별 | '97년도말 현재액 | '98년도 증 감 | | '98년도말 현재액 | 비 고 |
|-----------|---------------|------------|------------|---------------|-----|
| | | 증 | 감 | | |
| 합 계 | 1,476,624,226 | 98,564,714 | 19,374,896 | 1,555,814,044 | |
| 행정재산 | 1,458,796,571 | 88,652,789 | 13,923,680 | 1,533,525,680 | |
| 잡종재산 | 17,827,655 | 9,911,925 | 5,451,216 | 22,288,364 | |

공유재산의 '9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79,189,818천원이 증가된

1,555,814,044천원인데 이를 구분하여 보면,

- 행정재산의 '97년도말 현재액은 1,458,796,571천원으로 '98년도에 88,652,789천원이 증가되고 13,923,680천원이 감소되어 '98년도말의 현재액은 1,533,525,680천원이고,
- 잡종재산의 '97년도말 현재액은 17,827,655천원으로, '98년도에 9,911,925천원이 증가되고 5,451,216천원이 감소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은 22,288,364천원임.

○물 품

(단위 : 천원)

| '97년도말 현재액 | | '98년도 증 감 | | | | '98년도말 현재액 | |
|------------|------------|-----------|-----------|-----|-----------|------------|------------|
| | | 증 | | 감 | | |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8,788 | 44,509,263 | 1,765 | 9,700,034 | 714 | 4,294,798 | 9,839 | 49,914,499 |

물품의 '98년도말 현재액은 9,839점에 49,914,499천원으로, '97년도말 현재액 8,788점 44,509,263천원에 비하여 '98년도에 1,765점 9,700,034천원이 증가되고, 714점 4,294,798천원이 감소되었음.

아. 금고의 결산

(단위 : 천원)

| 총 수입 | 총 지출 | 차인잔액 | 비 고 |
|-------------|-------------|-------------|---|
| 802,204,004 | 679,826,075 | 122,377,929 | ○ 결산전 다음년도 세입 이입액은 122,377,929천원이며, 금고 예치금은 없음. |

'98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누계액은 총 수입이 802,204,004천원이고, 총 지출이 679,826,075천원이며, 차인잔액이 122,377,929천원으로 차인잔액 모두가 결산전에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는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과 일치함.

자.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세출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규정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집행지침 등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기관의 경비와 운영비를 절감하여 IMF 상황하에서 긴축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으로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시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시행을 추진하여 연도내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 교육시설이 부실하게 시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교육사업이 유보 또는 취소될 경우 시급한 교육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참석 5명, 찬성 5명).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